

장정훈 마무리 특강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실무종합

2020.00.00 [토]

담당 : 장 정 훈 교수

cafe.daum.net/tntpolice

<경찰학 총론>

제1장 경찰과 경찰학

❖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변천

고대	국정전반 - 정치 제외(O, X)
중세	• 15C () 경찰개념 → ()로 계수 • 독일 제국경찰법(16C) - 교회행정 ()한 국정전반
경찰국가	• 의무, 군사, 재무, 사법이 경찰에서 분리 • 내부행정 : 소극적 질서유지 + 적극적 복지증진
법치국가	• ()을 사상적 기초로 함 • 소극적 질서유지에 한정 • 프로이센 일반라트법(1794) - 공공의 평온 • 프랑스 죄와형벌법전(1795) - 개인의 안전 • 프랑스 지방자치법전(1884) - 위생(협회의 행정경찰 사무 포함) • 프로이센 경찰행정법(1931) - 의무에 합당한 재량 • 크로이츠베르크판결(1882) - 경찰발동범위 축소
2차 대전 이후	• 비경찰화 - 보안경찰 ()한 협회의 행정경찰사무 다른 기관에 이관 • 비경찰화 대상 - (보안경찰 / 협회의 행정경찰)

❖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비교

대륙법계	영·미법계
• 경찰권 발동범위 중심	• 경찰의 역할·기능 중심
• 수사가 경찰업무 (O / X)	• 수사가 경찰업무 (O / X)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구분 O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구분 X

❖ 판결

	국가배상책임 최초 인정 → 행정재판소 관할
	체포시 변호인선임권, 진술거부권 등 고지 의무
	행정(경찰)개입청구권 최초 인정

❖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 실정법 보통경찰기관 임무 - (조직 / 작용) 중심 • ()적 개념 • 국가별로 차이(O / X) • 사법, 정보, 보안(대공), 서비스 경찰 - 형식 (O / X), 실질 (O / X) • 다른 행정기관도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가능(O / X)	•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위해 명명 강제 - 타인의 행동을 제한규제 • (조직 / 작용) 중심 • ()의 ()학에서 유래 • () () 개념 • 소극목적에 한정(O / X) • 다른 행정기관 작용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 포함 (O / X)

❖ 경찰의 분류기준

• 3권분립 사상 - 행정경찰, 사법경찰(최초구분 : 죄와형벌법전(프))
• 업무의 독자성 - 보안경찰, 협회의 행정경찰
• 경찰권발동시점 - 예방경찰, 진압경찰
• 위해정도와 담당기관 - 평시경찰, 비상경찰
• 권한과 책임의 소재 - 국가경찰, 자치경찰
•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 - 질서경찰, 봉사경찰
• 사회적 가치나 이익 - 고등경찰, 보통경찰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행정경찰	사법경찰
• 현재 및 장래사태	• 과거사태
• 경찰행정법규	• 형사소송법
• (형식적 / 실질적) 의미 경찰	• (형식적 / 실질적) 의미 경찰
• 우리나라는 조직상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구분(O / X)	

❖ 국가경찰, 자치경찰의 장단점

- ① 각 지방의 특수성, 창의성 저해되기 쉽다 - ()의 단점
- ② 다른 지방경찰, 국가행정기관과의 협조곤란 - ()의 단점
- ③ 정부의 특정 정책수행에 이용되어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날 우려 - ()의 단점
- ④ 관료화되어 국민을 위한 봉사 저해 - ()의 단점
- ⑤ 정확·유용한 통계자료 확보곤란 - ()의 단점
- ⑥ 경찰활동의 능률성, 기동성 확보 - ()의 장점

❖ 실정법상 경찰의 임무(「경찰법」 제3조)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
 4. ()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
- *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 영미법계) 영향 받아 범죄수사가 경찰임무로 규정

❖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 - 경찰의 궁극적 임무

공공의 안녕	• 요소 - 법질서불가침(1요소), 공권력주체의 기관과 집행 불가침, 개인의 권리 및 법익불가침 • 일부는 개인, 일부는 국가와 관련(2중 의미) • 공공의 안녕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 사법규범위반 - 보충성원칙 적용 • 가벌성 범위 내 이르지 아니해도 정보·보안·외사활동 가능 • 사유재산적 가치 또는 무형의 권리도 보호 • 사법적 개인법익 - 경찰원호는 (최종적 / 잠정적) 보호
공공 질서	• 불문규범 총체 • 상대적·유동적 개념 • 적용 여지는 점차 축소경향
의의	가까운 장래에 손해 가능성 충분히 존재(손해 - 보호법익의 현저한 침해)
종류	• 구체적 위험, 추상적 위험 • 적어도 추상적 위험 있어야 경찰개입가능 • 위험이 보호법익에 필수적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님
위험 인식	• 외관적 위험 ① 합리적·사려 깊은 판단 O → 개입 → 실제위험 X ② 적법한 개입 : 손해배상 X, 손실보상은 가능 • 오상위험 ① 위험외관 X, 혐의정당화 X → 개입 → 실제위험 X ② 손해배상 O, 형사책임 O • 위험협의 - 위험가능성 예측 - 불확실, 위험조사차원 개입 정당화

❖ 경찰 지역관할의 예외

국회	• 국회의장은 () 동의 얻어 경찰 파견요구가 가능 → 경찰은 회의장 건물 ()에서 경호 • 국회 안에 현행범인 : 체포 후 의장의 지시, 의원은 회의장 안에서 의장 명령 없이 체포불가
법정내부	재판장은 개정전후 불문 경찰서장에게 경찰파견요구가 가능 → 경찰은 재판장의 지휘 받음
외교통관	• 사택, 승용차, 보트, 비행기도 불가침 • 화재나 감염병 발생 - 동의 없이 출입가능한 것이 국제관례 O
미군영내	• 동의한 경우와 중대한 죄 범한 현행범 추적시 체포가능 • 동의 없으면 시설구역 내외불문 미군재산 압수수색검증불가

장정훈 마무리 특강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실무종합

2020.00.00 [토]

담당 : 장 정 훈 교수

cafe.daum.net/tntpolice

❖ 경찰의 기본이념(가치)

민주주의	① 「헌법」 제1조 2항, 경찰권은 국민의 위임에 근거 ② 대외, 대내 모두 중요 ③ 성과급제도는 민주화방안 아님
법치주의	① 헌 37②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보·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② 경찰작용은 침익적 성격으로 인해 법치주의 엄격 적용. 다만, 비권력적 활동은 근거 규정 없어도 가능(단, 조직법적 근거는 있어야 하므로 직무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함)
인권존중	① 인권존중주의는 경찰법 제4조에 규정 있음 ② 피의자 등 대면하는 과정에서 수사경찰에게 특히 요구
정치적 중립, 경영주의(경찰관리와 밀접한 연관, 성과급제)	

제2장 한국경찰 사

1. 갑오개혁~한일합병 이전

갑오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94년 각아문관제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란 용어사용 ()소속으로 경찰 창설 → ()소속으로 변경 경무청관제직장 - 최초 조직법(경무청(장 - 경무사) 신설, 한성부안에 경찰지서 설치(서장 - 경무관)) 행정경찰장제 - 최초 작용법(광범위한 사무), 경찰업무와 일반행정과 완전 분화 (O, X)
경부 경찰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00년 내부에서 독립하여 경부 설치 이원적 체제 ① 경부 : 한성 및 개항지상 ② 그 외 : 총순 두어 관찰사 보좌(총순은 관찰사의 지휘 받음 (O / X)) 1902년 경무청으로 환원(전국관할) - 경찰청의 원형
경찰권 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96년 한성과 부산 간의 군용전신선 보호명목으로 일본의 헌병대 주둔, 헌병은 군사경찰 이외에도 행정경찰·사범경찰 겸함 1905년 을사늑약 계기로 경무청이 다시 한성부내 경찰로 축소, 통감부 산하 별도의 경찰조직 설립하여 한국경찰장악
경찰권 상실	취 → 한 → 사 → 경

2. 일제강점기

헌병경찰시대	보통경찰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헌병이 일반치안 담당 법적 근거 ()경찰은 의병출몰지역이나 군사상 중요한 지역, ()경찰은 개항장이나 도시에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운동계기로 총독부지속 경무총감부 폐지되고, 경무국이 경찰사무 감독 권한은 큰 변화 없음 ()법 제정 ()법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독에게 주어진 ()권, 경무총장 경무부장에 주어진 ()권 	

3. 임시정부경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경찰 뿌리, 임시정부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정치치안조직 상해임시정부부시기 ① 경무국 - 대한민국임시정부부장에 근거. 초대경무국장은 김구선생. 정식예산편성, 계급별 소정 월급지급 ② 연통제 - 기밀탐지활동과 독립운동자금 모집활동. 최종목적은 일제 저항운동 일으키는 것 ③ 의경대 - 교민사회 안명과 질서유지 충청시기 ① () - 1943년 「대한민국상행관제」에 따라 설치, 일반경찰사무 ② () - 임시정부 청사경비, 요인보호

- 임시정부경찰 주요인물
- ① () - 식산은행와 동양척식회사 폭탄투척
- ② () - 윤봉길의사 배후지원
- ③ () - 제2대 경무국장
- ④ () - 프랑스로계잡입

4. 미군정시기

- 일제청산 미흡
- 영·미법적 민주적 요소 도입
- 비경찰화(경찰업무 축소) - 위생사무 위생국으로 이관, 경제경찰과 고등경찰 폐지, 정보과 신설
- 치안입법 철저히 정리(정치에 - 보)
- 경찰은 일시 국방사령부 지휘·감독 → 1946년 경무부로 승격
- 1947년 6인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 설치(민주화조치 - 성공 X)
- 1946년 여경제도 신설
-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인정
- 상당히 많은 독립운동가 출신들 경찰에 채용

5. 정부수립이후

(1) 개관

- 경찰법 제정 전에도 행정관청 - 경찰서장
- 정부수립 이후 경찰법(1991) 제정이전 - 해양경찰업무와 전투경찰업무 추가, 소방업무 배제
- 1953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 최초반영된 경직법 제정

(2) 제1공화국

- 1948년 정부조직법에서 미군정 경무부를 내무부 치안국에서 인수 (1974년 치안본부)
- 내무부 치안국으로 축소 - 정부조직법 제정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제관리 출신이어서 일본과거 모방
- 문형순 서장(제주 4.3사건)
- 안종삼 서장 - 보도연맹사건
- 춘천지구전투 - 노종해경감
- 54년 경범죄처벌법

(3) 제2공화국 - 헌법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 규정, 1962년 청원경찰법제정

(4) 제3공화국

- 한일회담반대시위격화 - 경찰관으로 구성된 경찰기동대창설
-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헌법에 명시
- 1963년 대통령경호실 설치'1964 중앙정보부가 경찰의 정보·보안·외사 업무 장악
- 1969년 경찰공무원법 - 경정, 경장 계급신설, ()이상 계급 정년제 도입

(5) 제4공화국

- 1975년 소방업무 배제
- 74년 22특별경비대설치, 1976년 101경비단 증설
- 76년 용역경비업법
- 1979년 경찰대학설치법제정, 1981년 신입생선발
- 80년대 의무경찰제도 창설
- 80.5.18 당시 안병하 전남경찰국장과 이준규 목포서장은 신군부의 무장강경진압 거부

(6) 제5공화국

- ①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
- ② 6월 항쟁 이후 정치적 중립 지키지 못했던 과오 반성하고 경찰 중립화 요구하는 성명발표 등 자성의 목소리 나옴

(7) 1991년 「경찰법」 제정

- 치안본부가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승격
- 경찰이 선거부처로부터 완전독립은 못함
-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의 독립관청화
- 경찰위원회되어 민주적 통제시스템 구축, 치안행정협의회 두어 치안협력체제 마련

장정훈 마무리 특강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실무종합

2020.00.00 [토]

담당 : 장 정 훈 교수

cafe.daum.net/tntpolice

6. 경찰의 표상

- 안맥결 - 안창호 선생 조카딸. 미군정하 여경간부로 임용
- 최규식, 정중수 - 1.21 사건
- 차일혁 - 빨치산 토벌, 문화재보호
- 최종락 - 수사경찰의 상징. 수사반장 실제모델

제3장 경찰법원과 경찰조직법

❖ 법치행정의 원리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 또는 법규명령만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규정
법률의 우위	• 행정은 합헌적 법률에 위반되어선 안 된다 • '법률' - 헌법·법률·법규명령·행정법의 일반원칙까지를 포함
법률의 우요	• 행정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행해져야 한다. • 법적 근거 필요한 행정 범위에 대하여는 견해대립 • 법치주의의 적극적 측면
*조직규범	- 경찰활동이 「경찰법」 제3조의 직무범위 외의 것이라면, 경찰의 직무로 볼 수 없고 효과도 국가에 귀속되지 않음

❖ 경찰법의 법원

성문법원	헌법, 법률, 조약 및 국제법규, 명령(위임명령과 집행명령), 조례(지방의회), 규칙(지자체장)
불문법원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의 일반원칙)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구분	법규명령	행정규칙
근거	상위법령 근거 필요	상위법령 근거 불요
구속력	내부적 구속력 ○, 대외적 구속력 ○	내부적 구속력 ○, 대외적 구속력 ×
공포	필요	불요
효력	특별규정 없으면 공포 후 20일 경과	도달주의
위반 행위	법규명령 위반한 행정처분은 위법 ○ (무효 또는 취소사유), 징계사유 ○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처분은 위법 ×(무효 ×, 취소사유 ×), 징계사유 ○
• 헌법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 발령 • 법규명령은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부령(시행규칙)으로 구분 • 법규명령의 한계 - 전, 포, 재, 벌(벌칙규정의 위임은 절대적 금지 X) • 법규명령 형식(부령) 취하고 있지만, 내용이 행정규칙 - (법규명령 / 행정규칙)		

❖ 법률과 법규명령의 효력발생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
- 특별 규정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일 경과 후 효력발생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은 긴급 시행하여야 할 특별 사유 없으면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함

❖ 법의 일반원칙 = 조리

비례원칙	• 경찰권발동의 조건과 정도 • 초기 경찰행정영역에서 적용, 오늘날은 모든 행정에 적용 • 적, 필(최소침해), 상(협의의 비례원칙) (경찰은 참새 잡기위해 대포 쏘면 안된다. - 상당성) • 적, 필, 상 모두 충족되어야 적법 • 근거 - ()법 제1조 제2항 • 위반의 효과 - 위법(국가배상인정, 행정소송 대상)
------	---

신뢰보호 원칙	• 면허취소대상자를 착오로 면허정지 한 상태에서 지방청장이 면허취소를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 근거 - ()법 제4조 제2항 • 위반의 효과 - 위법(원칙 : 취소사유, 예외 : 무효)
---------	---

❖ 경찰관청

경찰청장	• 경찰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 (경찰법 / 정부조직법) * 국가 행정조직에 관한 기본법 - 정부조직법, 국가경찰 조직에 관한 기본법 - 경찰법 • 경찰청 - 행안부장관 소속 • 치안총감, ()등의 ()제청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이 임명. 국회 인사청문 필요 • 임기 2년, 중임 금지 • 청장이 ()위배 → 국회가 탄핵소추의결 • 퇴직 후 2년 이내 당원 될 수 있음 • 청장 사고 시 차장이 직무대행 • 국과수는 청장 부속기관 X * 경찰법 1조 -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
지방청장	• 지방청 - 시·도지사소속(2개 지방청 들 수 있음) •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서울, 부산, 인천, 경기남부 - 치안정감, 그 외 - 치안감 또는 경무관) • 경찰청장의 지휘·감독
서장	• 서장 - 경무관, 총경, 경정 • 경찰서 - 지방청장 소속, 지방청장의 지휘·감독 • 지구대·파출소 - 경찰서장 소속,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지방경찰청장은 행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 얻어 지구대·파출소 설치가능
- ()은 임시로 필요한 때 출장소 설치가능
- 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기타 필요 사항은 ()이 정한다.

❖ 경찰위원회

- 설치근거 : 「경찰법」 - 행정안전부에 설치, 경찰청에서 사무수행
-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의결 사항의 구체적 범위, 재의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심의·의결사항 : 국가경찰임무 외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그밖에 () 및 ()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 위원장 1인 포함 7인. 위원장 및 5인은 비상임위원, 1인은 상임위원(정무직)
- 위원장은 비상임 중 호선
- 위원장 사고 시 상임위원, 연장자 순으로 대리
- 위원 : 행안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 → 대통령이 임명
- 위원 중 2명은 법관 자격 필요
- 결격사유
 ① (), (), (), ()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미경과
 ② 선거로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미경과
 ③ 당직 이탈한 날부터 3년 미경과
 • 임기 3년, 연임불가.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
 • 중대한 신체·정신상 장애로 직무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외하고는 면직 X (면직 시 () 또는 ()의 요구에 의해 위원회 의결 필요)
 • 회의
 ① 정기회의 - 월 ()회
 ② 임시회의 소집요구 - 3명 이상 위원,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③ 의결 - 재과출과
 • 행안부장관은 ()일 이내 재의요구, 위원회는 ()일 이내 재의결
 • 경찰위원회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 거쳐 ()이 정한다.

❖ 치안행정협의회

- 자문기관
- 설치근거 : 경찰법, 조직운영 - ()으로 규정

장정훈 마무리 특강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실무종합

2020.00.00 [토]

담당 : 장 정 훈 교수

cafe.daum.net/tntpolice

- 시·도지사 소속(제주 제외)
- 위원장 포함 9인
- 위원장 - 부시장·부지사
- 정기회의 - 분기 1회, 필요한 경우 수시개회 가능

* 복종의무와 관련 ()법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적법성·정당성에 이견 있으면 이의제기 가능하다고 규정

❖ 훈령

근거	법적근거 불요
종류	협의를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일반적·추상적 사항뿐만 아니라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령가능
요건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령권 있는 상급관청이 발할 것 • 하급관청 권한 내에 속할 것 • 하급관청의 독립성 보장되는 사항 아닐 것
	실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명확할 것 • 내용이 적법하고 타당할 것 • 내용이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
경합	주관상급관청 → 주관상급관청이 서로 상하관계이면 직권상급관청 → 주관불분명시 주관청의 방법으로 해결
위반	훈령위반행위는 위법 X

❖ 훈령과 직무명령

구분	훈령	직무명령
의의	상급경찰관청이 하급경찰기관의 권한행사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상관이 직무에 관하여 부하공무원에게 발하는 명령 (직무와 관련없는 사항에는 효력 X)
법적 근거	불요	불요
구속력	대외적 구속력 X	대외적 구속력 X
위반시 징계사유	0	0
효력	관청구성자 교체 → 훈령의 효력에는 영향 ()	기관구성자 교체 → 직무명령의 효력에는 영향 ()
관계	훈령은 직무명령 겸할 수 ()	직무명령은 훈령 겸할 수 ()

❖ 권한의 대리 and 권한의 위임

비고	임의대리	법정대리	권한의 위임
법적근거	불요	필요	필요
범위	()대리	()대리	()위임
감독	()	()	()
복대리·재위임	복대리()	복대리()	재위임()
상대방	주로 보조기관	주로 보조기관	주로 하급관청
효과귀속	피대리관청	피대리관청	수임기관
권한행사 명의			
행정소송 피고			

-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
- 법정대리 - 협의의 법정대리, 지정대리
- 위임의 경우 특별규정없으면 ()이 비용부담
- 위임전결 - 행정관청이 보조기관에 사무처리에 관한 결정 맡기지 만, 외부에 대한 관계에서는 본래 행정청 이름으로 표시
- 대결 - 행정관청 내부에서 관청구성자 일시 부재시 보조기관이 대신결재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위임 - 행정기관장의 권한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겨
- 위탁 - 행정기관장의 권한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장에게 맡겨
- 위임기관은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취소·정지가능
-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 받거나 협의의 요구금지
- 수임사무 처리 책임은 ()기관, ()기관장은 감독책임
- 수임사무 행사는 ()기관 명의
- 위임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기관의 사무처리 상황 수시로 감사가능

제4장 경찰공무원과 법

❖ 경과

- 경찰공무원법 - 직무종류에 따라 경과로 구분. 경과구분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찰공무원임용령
 - ① 종류 - 일반경과, 수사경과, 보안경과, 특수경과(항공, 정보통신)
 - ② 원칙 : 총경이하, 수사와 보안경과는 경정이하, 신규채용시 경과 부여하여야 한다.

❖ 수사경찰인사운영규칙

- 유효기간 : 수사경과 발령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년. 수사경과발령일로부터 ()년이 되는 날이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라면 4월 30일까지, 해당연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라면 11월 30일까지 유효기간인 것으로 본다.
- 다음의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 ()
 1. 직무 관련 금품·향응수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2. ()간 연속으로 비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
 3. 제14조에 따른 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
- 다음의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 ()
 1. 직무 관련 금품·향응수수 외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2. 인권침해, 편파수사 등에 관한 시비로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시로 진정을 받는 경우
 3. 과도한 채무부담 등 경제적 빈곤상태가 현저하거나, 도박·사행행위·불건전한 이성관계 등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4. 수사업무 능력·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5. ()간 연속으로 수사부서 전임을 기피하는 경우
 6. 그 밖에 수사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수사경과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 임용권자

- 임용효력발생 - 임용장에 적힌 날짜(임용일자 소급효금지).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경찰공무원임용령)
- 경력경쟁채용 -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휴직의 경우는 5년)

대통령	• 총경이상 - () 추천 () 제청 () 거쳐 대통령이 임용 • 경정으로 신·승·면 - () 제청 () 거쳐 대통령이 한다.
청장	• 경정이하 • 총경의 휴·직·정·복·보·강
지방청장등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 임용권
서장	지방청장 위임받아 ()이하 전보권
임용권 위임 받은 소속기관등 장은 () 신규채용, () 승진시킬 때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 필요	

❖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
- 위원장 -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이 대행
- 위원 - 경찰청 소속 () 이상 중 ()이 임명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장정훈 마무리 특강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실무종합

2020.00.00 [토]

담당 : 장 정 훈 교수

cafe.daum.net/tntpolice

❖ 경찰공무원법상 결격사유

- ①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 ② 복수국적자
- ③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④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⑤ 자격정지 이상 형 선고 받은 자
- ⑥ 자격정지 이상 형 선고유예 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관련 형법상 횡령, 배임죄 범한 사람으로서 ()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고 형 확정된 후 ()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⑧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범한 사람으로서 ()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고 형 확정된 후 ()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⑨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⑩ 파면 또는 해임 처분 받은 자

❖ 부정행위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 - 시험 정지 또는 무효, ()년 간 시험 정지

❖ 채용후보자

- 신규채용은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순위(신입교육 받은 경우는 교육 성적 순위)
-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은 2년. 1년 범위 연장가능
- 질병 등 교육훈련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학 - 자격상실 X
- 시보예정자에게 교육훈련기간 동안 예산범위에서 임용예정계급 1호봉 봉급 80% 지급가능

❖ 시보임용

- ()이하 ()시. (), 기간이 ()날 정규임용
- (), (), (), ()기간 - 시보기간에 산입X
- 경찰대학 졸업자 또는 간부후보생, 퇴직한 경찰공무원, 자치경찰을 국가경찰로 임용 - 시보 안거침
- 징계사유,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 미만, 생활기록 극히 불량,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 미만 - () 심사 거쳐 면직 가능
- 정규임용심사위원회
- ①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
- ② 재적위원 ()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승진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무관 이하 승진은 승진심사 원칙 • 경정 이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특별승진임용 예정인원을 뺀 인원의 ()%씩)에 따라 시험과 심사병행가능 • ()이하의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근속승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경→경장 : 4년 이상 근속 • 경장→경사 : 5년 이상 근속 • 경사→경위 : 6년 6개월 이상 근속 • 경위→경감 : 10년 이상 근속 •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 위한 심사 연 1회 실시, 근속승진심사할 때마다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에 해당 인원수 초과 근속승진임용불가
특진	1계급 특진. () 이하의 특정한 경우 2계급 특진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 총경 : ()년 이상, 경정·경감 : ()년 이상, 경위·경사 : ()년 이상, 경장·순경 : ()년 이상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 전에 () 이상 징계 받으면 명부에서 제외() 	

❖ 전보

- ()년 이내 전보금지(감사 - ()년 이내 전보금지)
- 전문직위 - ()년 범위에서 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 전보금지
- 제한의 예외
 - 경찰로서 품위 크게 손상하는 비위로 인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직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찰을 전보 - ()담당 경찰공무원 가운데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 ()이하 경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찰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 휴직

직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정신상 장애로 장기요양 - () 이내(() 범위 연장가능, 공무상은 3년 이내) • 병역 복무 마치고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천재지변 등으로 생사 불명확 - () 이내 • 그 밖에 법률 규정에 따른 의무 수행 위하여 직무 이탈 • 공무원노동조합 전일자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의 대학·연구기관 등 임시 채용 - 채용기간(민간기업은 ()년 이내) • 국외 유학 - ()년 이내(()년 범위 연장 가능) • 중앙인사관장기관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 - ()년 이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임신 또는 출산 - 자녀 1명당 ()년 이내 • 장기간 요양 필요한 부모 등 간호 - ()년 이내 (재직 중 ()년 초과금지) • 외국에서 근무·유학하는 배우자 동반 - ()년 이내 (()년 범위 연장 가능) •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할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직 사유 없다면 ()일 이내 신고 → () 복직 명령 	

❖ 직위해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수행능력부족, 근무성적 극히 나쁜 자 - 봉급의 ()% 지급 • 중징계로 의결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제외), 금품, 성범죄 등으로 조사·수사 중인 자로서 정상적 업무수행 기대 현저히 어려운 자 - 봉급의 ()% 지급 (3개월 경과후에는 ()%) •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으로 적격심사요구 - 봉급의 ()% 지급(3개월 경과후에는 ()%)
효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종사 X, 출근의무 X • 직위해제기간 -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여부 ① 원직 - 산입 (O / X) ② 징계 X, 무회확정 - 산입(O / X)

❖ 강임과 전직 - 경찰공무원에게 적용 X

❖ 퇴직

1. 당연퇴직

- ① 경찰이 신규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
- ② 파산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신청기한 내 면책신청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퇴직
- ③ 「형법」 뇌물관련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 받은 경우만 해당

2. 정년

- 연령정년 - ()세
- 계급정년 - 치안감()년, 경무관()년, 총경()년, 경장()년
 - ① 특수부문 근무 총경·경정 - ()내에서 계급정년 연장가능
 - ② 비상사태 하에서는 ()내에서 계급정년 연장가능
- 강등 시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 정년, 강등되기 전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 근무연수 합산
- 장년퇴직 날이 1월~6월 사이 : 6월 30일, 7월~12월 사이 : 12월 31일 당연퇴직

장정훈 마무리 특강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실무종합

2020.00.00 [토]

담당 : 장 정 훈 교수

cafe.daum.net/tntpolice

❖ 직권면직사유

징계위 등의(O / X)	• 대기명령 받은 자가 능력, 근무성적 향상 기대근관 • 직무수행능력이나 성실성 현저히 결여 • 성격·도덕적 결함
징계위 등의(O / X)	• 폐직 또는 과원 • 직무 복귀 X • 자격상실, 면허취소

❖ 경찰공무원의 권리

- 재산상 권리 -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실비변상·실물대여청구권, 보상청구권
- 치안총감, 치안정감 및 시보임용 - 신분보장 X
- 행정소송시 피고 - () , 위임의 경우는 수임기관
- 무기후대 근거법() , 무기사용 근거법()
- 보수청구권
 - ① 보수에 관한 법령은 ()인 공무원보수규정
 - ② 보수에 대한 압류 - ()로 제한
 - ③ 소멸시효 - 5년, 판례는 3년
- 연금청구권
 - ① 각종 급여받을 권리는 인사혁신처장 결정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
 - ② 급여받을 권리는 사유 발생한 날부터 ()년간 행사 안하면 소멸
 - ③ 급여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 청구(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날부터 90일 이내)
- 공무원재해보상법
 - ①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할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 ② 급여받을 권리 - 사유발생한 날부터 요양·재할·간병·부조급여는 3년, 그 밖의 급여는 5년간 행사안하면 소멸

❖ 공무원직장협의회

-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가능
- ()이하 경찰공무원은 가입가능
- 지휘감독 공무원과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 못함
- 협의회는 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 개별적) 고충에 관한 사항을 기관장과 협의
- 협의회의 업무 전담공무원 둘수 (있음 / 없음)

❖ 경찰공무원의 의무

	일반	선서 의무, 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신분상	영, 비, 청, 정, 품, 집
	직무상	종, 친, 복, 직, 법
경찰공무원법	거짓보고 및 직무유기금지, 제복착용, 지휘권남용금지	
공직자윤리법	• 재산등록의무	
	① 공직자윤리법()이상, 시행령-경정, 경감, 경위, 경사 ②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 • 재산공개 의무 - 치안감 이상 경찰 및 지방경찰청장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의 재산 신고내용을 등록 또는 신고기간 만료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 • 선물신고(미화 100달러, 국내 10만원 이상) • 퇴직일부터 ()간 퇴직 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 금지. 단,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년 동안 소속 부서와 취업심사 대상기관 간에 밀접 관련 없다고 확인받거나 승인받으면 취업가능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 근무시간 중 음주금지, 민사 분쟁에의 부당개입 금지	
	• 비밀엄수의무 - 퇴직 후에도 준수, 직무상 알게 된 비밀도 비밀에 포함 •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는 없든 상관에게 증여 X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등 받는 경우 ()의 허가 필요
- 정치운동금지 위반 경찰 - () 이하 징역과 ()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
- 경찰이 '집단행위금지' 위반 - ()년 이하 징역 또는 ()만원 이하 벌금
-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금지(사실상 노무종사 공무원은 ())
- 사실상 노무 종사 공무원이 노조 전입자 되기 위해서는 ()의 허가 필요
- ()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 이탈 X. 수사기관이 공무원 구속하려면 소속기관 장에게 미리 통보(() 제외)
- 공무 외 영리목적으로 하는 업무 종사 못하며 () 허가 없이 경직금지
- 경찰이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직무유기금지 또는 지휘권남용등 금지 위반 - ()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 기본강령 - 경찰사명, 경찰정신, 규율, 단결, 책임, 성실형량
- 경찰은 근무관계변동시 ()에게 신고
- ()이내 복귀 어려운 지역 여행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특별한 경우 - 소속기관장의 허가)
- 1회 () 이내 포상휴가 허가 가능(연가일수에 산입 X)
-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연일근무자 및 공휴일 근무자는 다음날 1일 휴무 허가()
-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당직 또는 철야근무자는 다음 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오전 또는 오후 휴무를 허가()

❖ 경찰공무원 징계

1. 징계권자

- 경무관 이상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 파면 및 해임 - () 제청 ()과 () 거쳐 대통령이 한다.
-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 - 청장

2. 징계사유

- 법령 위반
-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 직무 내외 불분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 손상
- *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 적용받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징계 규정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이전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3. 퇴직 희망 공무원 징계사유확인

-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 희망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기관등에 확인 → 확인 결과 중징계사유 있는 경우 소속 장관 등은 지체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함

4. 징계의 종류

파면	경찰 X, 일반공무원(5년), 퇴직급여제한(5년미만 - 1/4감액, 5년 이상 - 1/2감액), 퇴직수당(근무연수상관없이 1/2감액)
해임	경찰 X, 일반공무원(3년),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제한없음(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해임 - 퇴직급여(5년 미만 - 1/8감액, 5년 이상 - 1/4감액), 퇴직수당(근무연수상관없이 1/4감액))
강등	1계급↓, 3개월간 직무정지, 보수 전액감액, 18개월 승진·승급제한(금품수수, 공금횡령, 음주운전(측정거부), 소극행정,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은 ()개월추가)
정직	1개월이상 3개월 이하 직무정지, 보수 전액감액, 18개월 승진·승급제한(금품수수, 공금횡령, 음주운전(측정거부) 소극행정,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은 ()개월추가)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보수 1/3감액, 12개월 승진·승급제한(금품수수, 공금횡령, 음주운전(측정거부), 소극행정,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은 ()개월추가)
견책	훈계하고 회개, 6개월 승진·승급제한(금품수수, 공금횡령, 음주운전(측정거부), 소극행정,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은 ()개월추가)

5. 징계와 형사벌

- 수사기관·감사원은 수사·조사 개시·종료한 때는 ()일 이내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
- 수사기관에서 수사개시 통보 받은 날부터 징계절차 진행하지 ()
-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받은 날부터 징계절차 진행 시기지 ()

장정훈 마무리 특강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실무종합

2020.00.00 [토]

담당 : 장 정 훈 교수

cafe.daum.net/tntpolice

6. 징계절차

- 징계사유 발생 시 징계 요구 () .
- 기관장은 소속 아닌 경찰에게 징계사유있으면 당해 기관장에게 통지 → 통지받은 기관은 ()일 이내 의견요구하여야 함
- 징계시효 : 사유 발생일로부터 () (금품수수 등은 ())
-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진술기회 주지않으면 징계는 무효
- 징계위원회 개최 ()전까지 출석통지서 도달
- 소재불명시 출석통지서 관보에 게재 → **개재일로부터** () 지나면 송달간주
- 출석통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미출석시 서면심사로 의결가능
- 징계의결요구서 받은 날로부터 ()이내 의결(부득이 하면 의결요구한 기관장 승인 받아 ()이내 연장가능)
- 징계위원회 의결 : 재과출과
- 징계의결시 징계대상자의 평소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의결요구자 의견 고려() .
- 경징계 : 징계의결 통고 받은 후 ()이내 집행
- 중징계 : 지체없이 임용권자에게 제청, 제청 받으면 ()이내 집행

7. 징계부가금

징계사유가 금전, 물품 등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는 해당 징계 외에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내 징계부가금 부과의를 징계위원회에 요구() .

8. 징계위원회

① 징계위원회 관할

국무총리 징계위원회	() 이상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 이하

- 소속 다른 2명 이상 경찰 관련된 징계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 - 모두를 관할하는 바로 위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② 징계위원회 설치

중앙징계위	경찰청
보통징계위	경찰청장이 지정한 ()이상 경찰을 장으로 하는 기관

③ 징계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명 이상 ()명 이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

④ 징계위원회 위원

공무원 위원	징계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 이상 중 경찰기관장이 임명
민간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장은 위에 따른 위원수의 () 이상을 다음 중에서 성별고려 민간위원 위촉. 임기 (), () 연임가능 •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앙징계위 - 법관·검사·변호사 ()년, 경찰학과 ()이상, ()이상 퇴직 ② 보통징계위 - 법관·검사·변호사 ()년, 경찰학과 ()이상, ()이상 근무

⑤ 징계위원회 위원장 : 위원 중 상위 계급자 또는 상위 계급에 먼저 승진된 공무원. 표결권(O / X)

⑥ 징계위원회 회의

위원장과 징계위원회 설치된 기관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명 이상 ()명 이하 위원으로 성별 고려하여 구성. 민간위원 수는 위원장 포함한 위원수의 ()이상

* 고충심사위원회

-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심사거친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 위원장 1명 포함 ()명 이상 ()명 이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 민간위원 수는 위원장 ()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회의 -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명 이상 ()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고려 구성.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
- 접수한 때는 ()일 이내 결정.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일 연장가능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임용권자는 조사결과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사실 확인 되면 피해자에게 교육 훈련 등 파견근무, 다른 직위로의 전보 등의 조치가능. 다만,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불가

* 소청

1.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 설치근거 - ()
- 위원장 1인 포함 () 상임과 상임위원수 ()이상 비상임위원() - 정무직
- 위원장·위원 : () 제청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이 임명
- 자격 : 법관·검사·변호사 () 이상, 행정학·정치학·법률학 부교수 이상 () 이상, 3급 공무원으로 () 이상 근무자
- 상임위원 : (), 한번 연임가능, 겸직불가
- () 이상 형벌 또는 장기 심신쇠약으로 직무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외하고는 면직 X
- 의결 : ()

2. 소청절차

- 징계처분 등 -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받은 날로부터 ()이내 청구. 기타 불리한 처분 - 처분이 ()로부터 ()이내
- 소청접수하면 **지체없이** 심사
- 반드시 진술기회부여 → 주지 않은 결정은 ()
- 소청심사위가 심사 위하여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기관장은 이에 () .
- 소청심사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O / X)
- 소청심사위원회 () () 결정은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등에 영향 미치지 아니함
-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 행정청 기속(O / X)
- 재심청구 X
- 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 또는 위원회가 ()일 지나도 결정 **않은 때**에는 행정소송제기가능
-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 심사결정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 (가능/불가)

제5장 경찰작용법

* 경찰관직무행법 제2조 제7호가 일반적 수권조항?

긍정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발동요건 규정은 불가능 • 개별수권조항이 없을 때 2차적·보충적 적용 • 일반조항으로 인한 경찰관남용은 조리상 한계로 통제 가능 • 일반조항을 확대해석하거나 남용하면 사법적심사 대상이 됨 • 독일 학설·판례도 인정
부정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조항 인정 시 법률유보의 형해화 • 대표적 권력적·침해적 작용이므로 구체적 수권필요 • 독일법과 달리 명시규정 없음

장정훈 마무리 특강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실무중합

2020.00.00 [토]

담당 : 장 정 훈 교수

cafe.daum.net/tntpolice

❖ 경찰관발동의 조리상 한계

1. 경찰소극목적원칙(크로이츠 베르크 판결)
2. 경찰공공의 원칙(사생활불간섭, 사주소불가침, 민사관계불간섭)
3. 경찰책임의 원칙

- 사법상 법인뿐만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경찰책임인정
- 고의·과실이나 정당한 권원유무·행위자의 행위능력·국적 등은 고려 X
- 경찰위반상태는 행위·상태의 특별한 위법성 요구하지 않음
-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 발생가능 - 지배자책임(지배자책임 성질 - (대위책임 / 자기책임))
- 행위책임과 상대책임 경합시 통상 행위책임자에게 먼저 경찰권 발동이 효과적일 것이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님
- 경찰긴급권
 - ① 긴급 필요 있는 경우 질서위반책임 없는 자에게도 경찰권 발동 인정
 - ② 반드시 실정법상 근거필요, 손실보상 인정

❖ 재량행위

- 재량권행사가 위법 - 취소소송등 항고소송 제기
- 재량권 불행사가 위법 - 경찰개입청구권 행사

❖ 경찰개입청구권

- 독일에서 학설·판례를 통해 발전된 개념(따뜻판결)
-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 범위는 점점 확대

❖ 하명

-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 의무부과 → 상대방은 행정주체에 대하여만 의무이행 책임 O, 제3자에 대해 의무부담하는 것 아님
- 원칙적으로 수명자에게만 발생, 대물적하명은 이전
- 의무불이행시 (), 의무위반시 ()
- 하명에 위반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에 아무런 영향 받지 않음 (하명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 (O / X))
- 구제
 - ① 적법한 하명 - 원칙 : 손실보상 X, 예외 : 특별회생시 손실보상 O
 - ② 위법한 하명 - 행정소송, 손해배상 등

❖ 허가

- 일반적·상대적 금지(부작위의무) 해제
- 절대적 금지는 허가대상 아님
- 상대방의 신청필요, 예외적으로 신청없는 허가도 있음
- 허가는 적법요건일뿐 유효요건 아님(무허가 거래행위 - 유효)

❖ 면제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행정행위

❖ 행정지도(행정절차법)

- 임의성 원칙, 비례원칙
- 불이익조치금지원칙
- 행정지도실명제
- 행정지도는 구술과 서면 모두 가능
- 의견제출가능

❖ 경찰관직무집행법

1. 목적

- 경찰관(국가경찰 공무원만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비례원칙 명문화

3. 불심검문(제3조)

- ① 경찰관은 다음 사람 정지시켜 질문().
 1. 합리적 판단할 때 어떠한 죄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② 경찰관은 대상자 정지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방해 인정될 때는 질문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 포함)로 동행요구 할 수 있다. 동행 요구받은 사람은 거절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은 질문시 ()까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 ④ 경찰관은 질문하거나 동행요구시 증표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목적·이유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 요구하는 경우 동행 장소 밝혀야 한다.
 - * 증표 - 공무원증 (O / X), 흉장 (O / X)
- ⑤ 경찰관은 동행인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경찰관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 알려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기회 주어야 하며, 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알려야 한다.
- ⑥ 6시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⑦ 질문받거나 동행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구속 X, 의사에 반하여 답변강요 X

*불심검문 관련 판례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 없었다고 하여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4. 보호조치(제4조)

- ① 경찰관은 구호대상자 발견 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할 수 있다.
 1. 정신착란 일으키거나 술 취하여 자신·다른 사람 생명·신체·재산에 위해 끼칠 우려 있는 사람
 2. 자살 시도하는 사람
 3.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 없으며 응급구호 필요 인정되는 사람. 다만,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
- ② 긴급구호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 이유 없이 긴급구호 거절불가(거절시 경직법상 처벌규정 없음)
- ③ 경찰관은 위험 물건 경찰관서에 임시 영치가능
- ⑦ 경찰관서 보호기간 24시간 초과금지, 임시영치기간 10일 초과금지

5. 위험발생의 방지조치(제5조)

- 경찰관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다음 조치가 가능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 ()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피난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방지 위하여 필요한 조치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하는 것
- ② ()은 대간첩 작전 수행이나 소요사태 진압위하여 필요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 제한하거나 금지()

6. 범죄예방과 제지(제6조)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 하고,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제지() .

7.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제7조)

- ① 경찰관은 위험한 사태 발생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 임박한 때에 위해방지하거나 피해자 구조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 ②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관리자나 관계인은 경찰관이 범죄나 사람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 예방위하여 영업시간이나 공개된 시간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면 상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장정훈 마무리 특강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실무종합

2020.00.00 [토]

담당 : 장 정 훈 교수

cafe.daum.net/tntpolice

8. 사실의 조화·확인 및 출석(제8조)

- ()은 국가기관이나 공사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 조화가능. 다만, 긴급 시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협조 받아 확인가능
- 경찰관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요구서 보내 출석요구 가능
 - 미아 인수할 보호자 확인
 - 유실물 인수할 권리자 확인
 -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 행정처분 위한 교통사고 조사 필요한 사실 확인

9. 국제협력(제8조의2)

()은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

10. 유치장(제9조) - 경찰서와 해양경찰서

11. 경찰장비의 사용(제10조)

-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시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 받은 후 사용 하여야 한다.
- "경찰장비" -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구, 차량선박항공기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장치와 기구
- ()은 위해성장비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 안전성검사 실시 하여야 하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 .
- 위해성장비의 종류 등은 ()으로 정한다.

12. 경찰장구의 사용(제10조의2)

- 장구사용요건
 -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 이상 징역·금고 해당 하는 죄를 범한 범인 체포·도주 방지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방어 및 보호
 -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 "경찰장구" - (), (), (), () 등

13. 분사기 및 최루탄의 사용(제10조의3)

- 경찰관은 다음 직무 수행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가 판단하여 최소 범위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 ()) 또는 최루탄 사용() .
- 범인 체포·도주 방지
 -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다른 사람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 발생 억제
- * 주의 -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제지 X

14. 무기의 사용(제10조의4)

위해 수반X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인체포·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 생명·신체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위해 수반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방위, 긴급피난 사형·무기, 장기 () 이상 징역·금고 범의자가 항거하거나 도주 체포·구속명장, 압수·수색명장 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 제3자가 중대범죄자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 위험한 물건 소지범인이 () 이상 투기·투항명령 받고도 계속 항거 무장간첩이 항복명령 받고도 불응

15. 사용기록 보관(제11조)

(), () (), () 사용 시 ()는 사용기록 보관

16. 손실보상(제11조의2)

-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생명·신체·재산손실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 .
-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 손실 있음 안 날부터 (), 발생한 날부터 ()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금 환수**() .
- 보상금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 **심사자료와 결과 보고**
- 보상금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금액 납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가능
- 손실보상의 기준 등은 ()으로 정한다.
 - 손실 입은 물건수리가능 - 수리비, 물건수리불가능 - 손실 입은 당시(보상당시 X) 물건 교환가액보상
 - 물건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 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
 - 영업자가 손실입은 물건수리·교환으로 영업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영업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한 금액
 -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
 -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 예산 부족 등 경우는 청구인 동의 받아 분할 지급가능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 ()에 설치
- 위원장 1명 포함 () 이상 () 이하 위원(() 이상은 경찰이 아닌 사람)
- 경찰 아닌 위원
 - 판·검·변호사 ()년 이상 근무
 - 법학·행정학 부교수 이상 5년 이상 근무
 - 경찰업무와 손실보상 학식과 경험 풍부
- 위원 임기 - ()
- 위원장 - 위원 중 () (사고시 ()자가 대행)
- 의결 - ()

17. 보상금지급(제11조의3)

-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은 범인 또는 범인소재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등에게 **보상금 지급** () .
- 보상금심사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라 보상금 지급, 부정방법으로 보상금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금 환수**한다. → 납부 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가능
- 보상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으로 정한다.
- 보상금 최고액은 (), 구체적 지급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

* 보상금심사위원회

-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급심사위하여 보상금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
- 위원장 1명 포함 () 이내
- 위원은 () 중에서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이 임명
- 위원장 - ()급 이상 경찰 중에서 경찰청장, 지방청장, 서장이 임명
- 위원회 의결 - ()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해당 범죄 : ()만원
- 장기 10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 해당 범죄 : ()만원
- 장기 5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 자격정지 또는 벌금 50만원 초과 범죄 : ()만원
- 벌금 50만원 이하 범죄 : ()만원
-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 기준으로 연간 ()회 초과하여 보상금 지급금지

장정훈 마무리 특강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실무종합

2020.00.00 [토]

담당 : 장 정 훈 교수

cafe.daum.net/tntpolice

18. 벌칙(제12조) - () 이하 징역이나 금고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경찰장비의 종류
- 1. 경찰장구 : 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및 전자방패
- 2. 무기 : 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포함)·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
- 3. 분사기·최루탄등 :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발사검용포함)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 포함)
- 4. 기타장비 :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
- ()자 또는 ()에게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 사용금지
- 총기등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자 또는 ()에 대하여 권총 소총 발사금지
-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탄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억제 위하여 가스발사총 사용가능. ()이내에서 상대방 얼굴향하여 가스발사총 발사금지
-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 발사 - () 이상 발사각 유지,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발사 - () 이상 발사각 유지
- 살수차 - ()에 따라 살수차 배치사용가능(위험 제거·완화 곤란 판단하면 ()에 따라 최루액 혼합 살수가능. 이 경우 최루액 혼합 살수 절차 및 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하는 경찰관이 소속한 국가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관이 사용할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하여야 한다.
- 외부전문가는 안전성검사 끝난 후 ()이내 경찰청장에 의견 제출
- 경찰청장은 안전성검사 실시 후 ()이내 검사결과보고서 ()에 제출
- 살수차, 분사기·최루탄, 무기사용 하는 경우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사용보고서작성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보고 → 직근상급 감독자는 ()간 보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
- 정보공개청구권자 - ()외국인 - 대통령령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 다만,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
- 비공개대상에 해당 정보가 기간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 없다면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정보공개절차
- ① 해당정보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이나 ()로 청구가능
- ② ()이내 공개여부결정(부득이한 경우 다음날부터 ()법위 내에서 연장가능). 3자 관련정보는 () 3자에게 통지. 필요하면 그의 의견을 ()
- 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이내 비공개 요청가능
- 정보공개심의회
- ① 위원장 1명 포함 () 이상 () 이하
- ② 위원장 제외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위촉. 그 중 ()은 외부전문가로 위촉
- 비용 - ()부담(공공복리유지·증진 위한 경우는 비용 감면가능)
- 청구인불복
- ① ()이내 당해 기관에 ()으로 이의신청 → ()이내 결정(부득이한 경우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내 연장가능)
- ②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가능
- 제3자 보호
- ① 제3자의 이의신청 - 통지받은 날부터 ()이내
- ②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일 간격 두어야 함
- 정보공개위원회
- ① () 소속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위원

- ③ 임기 - (), 연임가능
- ④ 위원장 포함한 ()은 공무원 아닌 사람으로 위촉
- 행안부장관은 위원회가 요청하면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선관위 ())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가능

❖ 의무이행확보수단

1. 개관

전통적	경찰	• 강제집행(대집행, 집행벌, 직접강제, 강제징수)
	강제	• 즉시강제
새로운	경찰	• 경찰형벌
	벌	• 경찰질서벌
과징금, 가산금, 공급거부, 명단공표, 관허사업제한, 해외여행제한, 수의직 행정행위 취소철회, 취업제한 등		

직접적	• 강제집행 중 대집행, 직접강제, 강제징수
간접적	• 즉시강제
	• 강제집행 중 집행벌
	• 경찰벌
	• 새로운 수단

2. 강제집행

대집행	•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 주체 - 의무부과한 행정청
	• 절차 : 계 - 통 - 실 - 비
집행벌	•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 불이행
	• 경찰벌과 병과가능. 의무이행될때까지 계속부과가능
강제징수	• 금전급부의무 불이행
	• 의무불이행에 대한 최후수단
직접강제	• 해산명령 후 집회차 해산
	• 사증없이 입국한 외국인 강제퇴거
	• 불법영업소 폐쇄조치

3. 즉시강제

- 권력적 사실작용이라는 점에서 경찰상 강제집행과 같으나 의무 불이행이 전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
- 즉시강제는 예외적인 권력작용이므로 격한 법적 근거필요
- 영장주의 적용여부 - 절충설(원칙 : 적용 O, 예외 : 적용 X)
- 즉시강제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쟁송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하지만, 성질상 단기내 내 종료되어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행정소송은 즉시강제 성질상 부적합
- 즉시강제를 규정한 법령의 목적달성을 위해 구체적 상황에 따른 최소한의 강제력 행사 가능함. 단, 필요 이상의 실행행사는 위법임은 물론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이 발생함

대인적	① 불심검문	② 보호조치
	③ 범죄예방 및 제지	④ 경찰장구사용
대물적	⑤ 분사기 등 사용	⑥ 무기 사용
대가택적	임시영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 즉결심판

-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공소장일본부주의 예외
- 즉심대상 X → 즉심청구 : ()
- 공개된 법정(() 외의 장소에 설치)
- 정식재판포기가능
- 정식재판 - ()일 이내 정식재판청구서를 ()에게 제출
- 서장의 정식재판청구 - 무죄, 면소, 공소기각(청구기각결정 X)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유치장에 유치명령가능

장정훈 마무리 특강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실무종합

2020.00.00 [토]

담당 : 장 정 훈 교수

cafe.daum.net/tntpolice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질서위반행위 성립과 과태료 - () 법률
- 고의·과실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 (O / X)
-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과태료 부과 X
- ()세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 X
-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하면 각자가 질서위반행위 한 것으로 본다.
- 심신장애로 행위의 옳고 그름 판단 능력없거나 판단에 따른 행위할 능력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 X.
- 과태료는 ()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 과태료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 이상 기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 주어야
- 의견제출 절차 마친 후에 ()으로 과태료 부과
-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이 경과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못함
- 과태료 부과 통지 받은 날부터 ()이내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가능 →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 납부의무자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 이상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대통령령 - 9개월 이내(1회 한정하여 3개월 범위에서 연장가능))

❖ 행정절차법

-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절차
- 공시송달은 특별규정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일 경과 후 효력발생
- 의견청취절차 -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 ① 당사자에게 의무부과하거나 권의제한 처분시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 없으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O / X)
- ② 당사자들은 처분 전에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 가능
- ③ 처분할 때 당사자들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반영()
- ④ 청문하려면 청문시작 ()일 전까지 당사자들에게 통지
- ⑤ 당사자들은 청문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때까지 문서의 열람·복사 요청가능 →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제외하고는 요청 거부불가
- ⑥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신청하거나 주재자가 필요 인정하면 공개()
- 입법예고는 특별사정 없으면 ()일(자치법규는 ()일) 이상

❖ 국가배상법

- 국가배상법상 배상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X)
-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요건
- ① 타인에게 손해발생 : 타인 - 외국인 배상책임은 ()주의
- ② 군인 등에 대한 특례 - (), (), (), ()이 전투 등 직무집행 관련 전사, 순직, 공상 입은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국가배상 금지
- 영조물의 설치·관리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
- 지자체장이 설치하여 지방청장에게 위임된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사고발생시 국가도 배상책임 부담
-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양도·압류 금지
-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피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경찰청장 X, 지방경찰청장 X)

❖ 행정심판

- (열기주의 / 개괄주의) -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인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 청구가능. 다만, ()의 처분 또는 부작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 청구불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
- ① 경찰청장이 행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② 지방경찰청장이 행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③ 경찰서장이 행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소송제기 효과 - 집행 부정지
- 예외(집행 정지) - 절차 : 당사자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
- ①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 등 존재 -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는 집행정지불가능
- ②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
- ③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
- ④ 긴급한 필요
- ⑤ 집행정지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제6장 경찰행정학

❖ 관료제

1. 이상적인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M. Weber)

- 계층제적 구조 - 가장 큰 특징
- 권한과 직무범위는 법규(관례 X)로 정해짐
- 직무수행은 문서로, 기록은 장기간 보존
- 객관적 법규에 의해 임무수행
- 전문적 지식과 기술 가진 관료가 직무수행

2. 관료제의 문제점(Robert K. Merton)

- 동조과잉(목표의 전환) : 달성 위한 수단에 지나치게 영합하고 동조 → 목표를 소홀히 하고 수단이 중시
- 할거주의 : 소속기관이나 부서에만 충성
- 번문옥례(red-tape) : 서류절차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형식주의
- 권력구조 이원화 : 상관의 계서적 권한과 부하의 전문적 권력 이원화되어 조직내 갈등발생
- 전문가적 무능 : 특정분야의 전문성만 갖추 관료의 편협한 시각
- 무사안일주의 : 상급자 권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소극적 일처리
- 피터의 원리 : 무능력자의 승진

❖ 조직의 편성원리

계층제 원리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를 책임·난이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계층 간에 명령복종관계 적용 • 조직의 일체감과 통일성 유지 • 권한과 책임 배분 통하여 업무의 신중 • 조직 경직화 - 새로운 지식·기술 도입 곤란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단계가 늘어나 업무흐름 차단되거나 처리시간 지연 • 업무처리과정 지연은 관리비용 증가와 계층 간 갈등 원인이 됨
통솔 범위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정하는 원리 • 구조조정문제와 관련 • 통솔범위는 신설부서보다는 오래된 부서, 지리적 분산 부서보다는 근접 부서, 복잡한 업무(전문적 사무)보다는 단순한 업무의 경우에 넓어짐 • 교통이 발달할수록 통솔범위 확대 • 청사규모는 통솔범위 원리와 관련 없음
명령 통일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시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하여야 • 계층제에 의해 상위직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하위자에게 분담시킴으로써 통솔범위 한계를 재조정하거나 명령통일의 한계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 - 권한의 위임
분업의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를 성질과 종류별로 구분하여 한 사람에게 한 가지의 동일한 업무만을 전담
조정과 통합의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의 원리가 필요한 이유 - 구성원의 행동통일 • 세분화된 업무처리 때문에 갈등발생 - 업무처리과정 통합한다든지 연결하는 장치나 대화체널확보 필요함 • 한정된 인력이나 예산때문에 갈등발생 - 관리자는 업무추진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어야 한다.

장정훈 마무리 특강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실무종합

2020.00.00 [토]

담당 : 장 정 훈 교수

cafe.daum.net/tntpol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 : 갈등완화, 양자 간의 타협을 도출, 관리자가 갈등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보류 또는 회피하는 방식 사용 조직구조, 보상체계, 인사 등의 제도개선과 조직원의 행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적인 대응방안

❖ 업관주의와 실적주의

업관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 당파성에 기준 미대통령 잭슨 행정을 단순하게 보아 누구나 수행가능 			
	<table border="1"> <tr> <td>장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정치발전 - 국민지지에 따라 정부가 구성되어 정책추진 용이하고 의회와 정부의 조정원활 </td> </tr> <tr> <td>단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의 공정성확보곤란 인사의 공정성 저해 </td> </tr> </table>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정치발전 - 국민지지에 따라 정부가 구성되어 정책추진 용이하고 의회와 정부의 조정원활 	단점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정치발전 - 국민지지에 따라 정부가 구성되어 정책추진 용이하고 의회와 정부의 조정원활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의 공정성확보곤란 인사의 공정성 저해 			
실적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의 자격과 능력 			
	<table border="1"> <tr> <td>장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분보장으로 인한 행정의 전문성·독자성·계속성 확보 공직에의 기회균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확보 공무원의 부패방지 인사관리 경직성 </td> </tr> <tr> <td>단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보수화와 특권의식화 정당이념의 행정에의 반영곤란 국민요구에 대한 반응성 저하 우려 </td> </tr> </table>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분보장으로 인한 행정의 전문성·독자성·계속성 확보 공직에의 기회균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확보 공무원의 부패방지 인사관리 경직성 	단점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분보장으로 인한 행정의 전문성·독자성·계속성 확보 공직에의 기회균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확보 공무원의 부패방지 인사관리 경직성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보수화와 특권의식화 정당이념의 행정에의 반영곤란 국민요구에 대한 반응성 저하 우려 			

• 대부분의 현대국가에서 실적주의를 기반으로 하면서 업관주의적 요소를 보충적으로 가미
*파킨슨의 법칙 : 업무량 상관없이 관료제 구성원의 수가 늘어난다는 법칙

❖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구분	계급제	직위분류제
운용	독일·프랑스·한국·일본 등	미국 시카고시에서 처음 실시
인간·직무	사람중심 분류방법	직무중심 분류방법
신분보장	신분보장 O	신분보장 미흡
장점	인사배치 신속성, 융통성	인사행정의 합리화
조정·협조	기관간의 횡적협조 ()	기관간의 횡적협조 ()
권한 및 책임	권한과 책임 한계 명확()	권한과 책임 한계 명확()

• 계급제는 계급수가 적고 계급간의 차별이 심하며 외부충원이 힘든 폐쇄형 충원방식 취함
• 우리나라 -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가미
• 직위분류제는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 원칙' 확립 → 보수제 합리적 기준제시

❖ 근무성적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① ()이하 경찰에 대해서 매년 근무성적 평정하여야 하며, 평정결과는 인사관리에 반영() ② 평정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평정요소 - 객관적 요소 : ()점 ㉡ 제2평정요소 - 주관적 요소 : ()점 ③ 총경의 근무성적 평정은 제()평정요소에만 의하여 평정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근무성적 평정, 경력 평정은 ()회 실시 ② 근무성적 평정은 () 기준, 경력 평정은 () 기준. 다만, 총경과 경정의 경력 평정은 () 기준 ③ 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통보()

❖ Maslow의 인간욕구 5단계

생리적 욕구	적정보수제도, 휴양제도
안전 욕구	신분보장, 연금제도
사회적 욕구	인간관계개선, 고충처리 및 인사 상담
존경 욕구	참여확대, 권한위임, 제안제도, 포상제도
자기실현 욕구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 공무원 단체 활용

• 한 단계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 욕구 충족하려 노력

❖ 경찰예산관리

1. 경찰예산 - 대부분 일반회계(특별회계는 기획재정부의 직접통제 안받음)
2. 예산 성립 과정 기준 분류

수정예산	국회에 예산 제출 후 예산 성립 전 수정
추가경정예산	국회에서 예산 성립된 후 추가변경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될 때까지 국회통과 못한 경우 국회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

• () - 특정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기간 지나면 의무적·자동적 폐지되게 하는 법률

• 자본예산 - 경상지출은 경상수입과 충당시켜 균형, 자본지출은 적자재정과 공채발생으로 그 수입이 충당케 하여 불균형

3. 예산제도

품목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출 대상인 물품, 품목 등을 기준으로 한 예산제도 장점 - 회계책임명확,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제공, 회계 검사 용이, 행정의 재량범위 축소 단점 - 기능중복피하기 곤란, 계획과 지출불일치,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제시 부족
성과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사업별로 단위원가×업무량 = 예산액 장점 - 국민입장에서 경찰활동 이해용이, 자원배분합리화, 예산집행 신속성, 해당부서 업무능률 측정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단점 -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적용 어려움
계획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프로그램작성 통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 합리화
영기준	조직체의 모든 사업·활동을 총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우선순위 결정된 뒤 예산을 근원적으로 결정

4. 예산과정

(1) 예산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청장은 매년 ()까지 () 회계연도부터 () 회계연도 이상 신규사업 및 ()이 정한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 기재부장관에게 제출 기재부장관은 ()의 심의거쳐 대통령 승인 얻은 다음 연도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 경찰청장은 예산요구서를 매년 ()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기재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 거친 후 대통령 승인연고, 회계연도 개시 () 전까지 국회에 제출
--

(2) 예산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관서장은 예산확정후 예산배정요구서 기재부장관에게 제출 기재부장관은 분기별 배정계획 작성 국무회의 심의거친후 대통령의 승인 얻어야 함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장에게 예산배정시 감사원에 통지 중앙관서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 사용금지 기재부장관은 예산집행 효율성 높이기 위해 매년 예산집행 지침 작성하여 중앙관서장에게 통보 중앙관서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예산 확정되어도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출원인행위 금지
--

장정훈 마무리 특강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실무종합

2020.00.00 [토]

담당 : 장 정 훈 교수

cafe.daum.net/tntpolice

(3) 결산

- 중앙관서장은 중앙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
- 기재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까지 감사원에 제출
-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 검사하고 보고서를 다음 연도 ()까지 기재부장관에게 송부
- 정부는 감사원 검사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까지 국회제출

5. 관서운영경비

- 관서운영경비 범위
- ① 운영비·특수활동비·안보비 및 업무추진비 중 500만원 이하의 경비(운영비 중 공과금 및 위원회 참석비, 특수활동비중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외)
- ② 여비
-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아니면 지급불가
-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금융회사등에 예치하여 관리
-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까지 해당 지출관에게 반납

❖ 무기 및 탄약관리

강제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대상이 된 자 • 형사사건으로 조사대상이 된 자 • 사의를 표명한 자
임의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소지 적격심의회 심의 거쳐 무기·탄약 회수가능 • 직무적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 • 정신건강상 문제 우려되어 치료 필요 • 정서적 불안 상태로 인하여 무기 소지가 적합하지 않은 자로서 소속 부서장의 요청 • 경찰기관장이 무기 소지 적격 여부에 대해 심의 요청
무기고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 출입 • 상사 사무실 출입 • 기타 정황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 경찰장비관리규칙

- 차량구분 - 차종:승용·승합화물·특수용, 차형:대형·중형·소형·경형·다목적형, 용도별:전용·지휘용·업무용·순찰용·특수용
- 차량소요계획 - 매년 ()말까지 제출
- 다음년도 교체대상차량 - 매년 ()말까지 보고
- 차량교체 - 차량의 사용기간을 최우선 고려
- 차량운행시 책임 - 1차: 운전자, 2차: 선임탑승자, 3차: 경찰기관의 장
- 의경신입 운전교육 - () 이상

❖ 보안관리

1. 비밀 - 보안업무규정(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 I 급, II 급(막대한 지장), III 급(해를 끼칠 우려)
2. 비밀분류원칙
 - 과도 또는 과소분류금지(()등급), 독립분류, 외국비밀존중(()기관)
3. 보안업무규정
 - 중앙행정기관에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설치.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 ()은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제작하여 필요기관에 공급. 다만, 국정원장이 필요 인정하는 암호자재의 경우 그 암호자재 사용기관은 국정원장이 인가하는 암호체계 범위에서 암호자재 제작가능
 - 암호자재사용기관의 장은 사용기간 끝난 암호자재를 지체없이 ()에게 반납
 - 비밀은 해당 등급 비밀취급 인가 받은 사람만 취급가능
 - 비밀관리기록부 : 각급기관장은 비밀작성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 사항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 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로 관리

- 비밀은 모사·타자·인쇄 등 원형 재현하는 행위금지. 다만, 다음에 따른 비밀의 경우에는 허용
- ① I 급 비밀 : ()를 받은 경우
- ② II 급 비밀 및 III 급 비밀 :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 비밀취급 인가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비밀의 열람
- ① 비밀은 해당 등급 비밀취급 인가 받은 사람 중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있는 사람만 열람
- ② 비밀취급 인가 안받은 사람에게 비밀 열람·취급하게 할 때는 국정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미리 열람자 인적사항과 열람하려는 비밀내용 확인하고 자체 보안대책미련. 다만, I 급비밀 보안조치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
- 공무원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의 승인 없이 비밀공개금지
- 비밀은 보관시설 밖으로 반출금지. 다만, 공무상 반출 필요시 ()의 승인 받아야 함
- 각급기관장은 () 비밀 소유 현황 조사하여 국정원장에게 통보
- 보호지역
- ① 보호지역은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구분
- ② 보호지역에 접근·출입하려는 사람은 각급기관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 I 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 타비밀과 혼합 보관금지
- II 급 및 III 급비밀은 금고 또는 철제상자나 안전용기에 보관, 보관책임자가 II 급비밀 취급인가 받은 때는 동일 용기에 혼합 보관가능
- 보관용기 외부에 비밀보관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금지
-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내에 보관
- 비밀접수증, 비밀열람기록전 - 비밀에서 분리한 후 편철하여 5년간 보존

5. 보호지역

제한지역	울타리, 감시
제한구역	안내
통제구역	금지

제한구역	통제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교환기(통합장비)실, 정보통신실 • 발간실 • 송신 및 중계소, 정보통신관제센터 •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항공대 • 작전·경호·정보·보안업무담당부서전역 • 과학수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호취급소 • 정보보안기록실 • 무기창·무기고 및 탄약고 • 종합상황실·치안상황실 • 암호장비관리실 • 정보상황실 • 비밀발간실 • 종합조회처리실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시스템 -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과제관리 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 ()시스템 -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합한 시스템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의 종류
- ① ()문서 -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 등에 관한 문서
- ② ()문서 -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 ③ ()문서 -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 ④ ()문서 -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
- ⑤ ()문서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장정훈 마무리 특강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실무종합

2020.00.00 [토]

담당 : 장 정 훈 교수

cafe.daum.net/tntpolice

- ⑥ () 문서 - 위에 속하지 않는 모든 문서
 -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으로써 성립
 -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으로써 효력 발생
 - ③ 공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는 날부터 ()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발의자와 보고자의 직위나 직급 앞 또는 위에 발의자는 ★표시를, 보고자는 ○표시

❖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

	"단란하고 행복스럽지 않지만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
	경찰과 대중매체는 상호 필요성 때문에 공생관계로 발전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 얽혀서 범죄와 정의, 사회 질서의 현실을 해석하고 규정짓는 사회기구의 역할을 수행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정정보도, 반론보도청구 - 안날부터(), 있는 날부터()
- 정정보도,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불요
-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등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함
- 정정보도청구 거부사유
 - ① 정정보도청구권 행사할 정당한 이익 없는 경우
 - ② 청구된 정정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 ③ 청구된 정정보도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 ④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⑤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 ()이내 수용여부 청구인에게 발송, 수용할 때는 청구 받은 날부터 ()내 정정보도문 발송
- 조정 - 협의불성립 된 날부터 ()이내 신청
- 조정기간 - ()이내
- 신청인 () 미출석 - 조정신청 취하, 언론사 () 미출석 - 신청취지에 따라 이행하기로 함의
- 중재위원은 합의 권유 가능
- 언론중재위원회
 - ① () 이상 ()이내 위원
 - ② 문화체육부장관이 위촉
 - ③ 위원장 1명, ()이내 부위원장, ()이내 감사 - 호선
 - ④ 임기 - (), 1차 연임가능
 - ⑤ 재과출과

제7장 경찰통제

❖ 경찰통제의 유형

1.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

민주적 통제	사법적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위원회 • 경찰책임자 선거 • 자치경찰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소송(열기주의에서 개괄주의로 전환하여 사법구제 확대) • 국가배상제도

2. 사전통제, 사후통제

사전통제	사후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절차법(의견제출, 청문, 입법예고 등) • 국회의 입법권, 예산심의권 •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심사 • 예산결산권, 국정감사조사권 • 행정심판, 징계책임 • 상급기관의 감사권

3. 내부통제, 외부통제

내부통제	외부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문감사관, 감찰관 • 훈령권·직무명령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통제(국회) • 사법통제(법원) • 행정통제(행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부패혐의대상자가 경우관급 이상으로서 혐의내용이 수사 및 공소제기필요성 있으면 위원회 명의로 고발하여야 함
-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일 이내에 처리, 30일 이내에서 연장가능
- 19세 이상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300명) 이상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가능

❖ 경찰감찰규칙

- 감찰 - 복무기간 확립과 경찰행정의 적정성을 확보 위해 경찰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하고 결과를 처리하는 감찰관의 직무활동
- 급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범죄로 징계 처분 받은 사람은 말 소기간 상관없이 감찰관 불가
- 전보 - () 이상 성실 근무 감찰관은 희망부서고려 전보 (()이내 본인의사에 반하여 전보금지)
- 관할 -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 상급기관장 지시 있으면 관할구역 밖에서 활동가능
- 교류감찰 - 경찰기관장은 상급기관장 지시에 따라 소속 감찰관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다른 기관 직원 점검가능
- 감찰관은 소속공무원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단서 수집·접수한 경우 소속 경찰기관의 ()에게 보고
- 출석요구 - 조사기일 ()전까지 통지
- 감찰관은 감찰조사 실시전에 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알려야 함
- 감찰관은 대상자가 다음 사항을 신청할 경우 다른 감찰관이나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감찰관은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대상자의 동료공무원이나 조사대상자의 직계친족, 배우자 가족 등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 줄 수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심야 ()조사 금지, 대상자 또는 변호인 요청있으면 가능
- 사건처리 - 민원제기(()이내), 다른 기관 통보(()이내)
-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통보 받으면 수사결과 통보받을 때 까지 감찰조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
- 감찰관 의무위반은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징계

❖ 경찰행정사무감사규칙

1. 감사종류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 점검
	특정한 업무·사업 등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예산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적정성 여부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분석과 평가
	피감사기관에 속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 준수 여부

2. 감사담당자 결격사유

- 징계처분 받은 날부터 ()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감사담당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

3. 감사결과조치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
	대안을 제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장정훈 마무리 특강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실무종합

2020.00.00 [토]

담당 : 장 정 훈 교수

cafe.daum.net/tntpolice

❖ 인권

1. 국가인권위원회법

- ① 구금보호시설 - 경찰서 유치장, 다수인 보호시설(아동복지시설 등) 등
- ② 이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
-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성 인정시 구금보호시설 방문조사 가능

2. 경찰인권보호규칙

- ① 경찰관 등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
- ②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

- 위원장 1명 포함 7명이상 13명 이하. 특정성별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 초과금지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 당연직위원 - 경찰청은 감사관, 지방청은 청문감사담당관

③ 인권교육

- 경찰청장은 ()년 단위로 인권교육종합계획 수립·시행
- 경찰관서장은 () 인권교육 계획 수립·시행

④ 인권영향평가

- 제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 - 해당 안건을 경찰위원회에 상정하기 ()일 이전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인권침해 가능성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 - 종료일로부터 ()일 이전에 인권영향평가 실시

⑤ 인권보호담당관은 ()회 이상 인권영향평가 이행여부 점검하고, 이를 경청 인권위원회에 제출

⑥ 조사담당자는 제출자가 보관중인 물건의 반환요구하면 반환하여야 하며, 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환가능

⑦ 진정 기간

-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 확인 불가능
- 진정 내용이 이미 피해회복 이루어지는 등 따로 구제조치 필요 X
- 진정 내용은 사실이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공소사료, 징계사료 및 민사상 사료 등이 모두 완성된 경우 - (기각사유 / 각하사유)

제8장 경찰과 윤리

❖ 바람직한 경찰역할모델

범죄와 싸우는 모델	• 범법자 제압강조 - 전문직화에 기여, 인권침해 우려
치안서비스제공자 모델	• 시민에 대한 서비스 활동과 사회봉사활동 측면강조 • 공식적이고 명백한 근거 없는 경우에도 법적근거를 가진 사회봉사활동기관의 활동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이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된다.

❖ 경찰의 전문직업화(오거스트 볼머)

문제점 - 부권주의, 소외, 차별, 사적 이익이용

❖ 치안의 유형

- 사적조직원칙과 사적비용 지출 - 효율성 ↑, 형평성 ↓
- 공적조직원칙과 공적비용 지출 - 효율성 ↓, 형평성 ↑

❖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보수주의	• 범죄를 개인의 선택으로 보며 엄격한 법 집행 주장 • ()예방은 범죄를 저지른 타인이 체포되어 처벌되는 것을 보는 일반사람들의 반응, ()예방은 범죄 후 처벌을 직접 경험한 개인의 반응에 의해 이루어진다.
진보주의	• 범죄원인을 가정과파괴, 교육결핍 등 사회적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 - 어느 정도는 사회에 책임 돌리는 동시에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재할 중시 • 청소년 범죄에 대한 '다이버전' • 최근의 회복적 사법도 진보주의적 관점

❖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이론

- 주장 : () - 부패에 (해당하는 /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가 부패로 이어짐(비판 - ())
- * 델라트르 - 전체가 아닌 일부경찰관이 이 이론에 따라 큰 부패로 이어지지만 이를 간과 X(=작은호의금지)
- 형성재 이론 : 작은 호의에 대한 (허용론 / 금지론)

❖ 부정부패의 정의(하이덴 하이머)

- 관직 중심적 정의 - 부패는 뇌물수수는 물론 금전적 형태가 아닌 사적 이익 고려하여 권위 남용
- 시장 중심적 정의 - 고객이 위험 감수하고라도 원하는 이익을 위하여 높은 가격 지불
- 공익 중심적 정의 - 보수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이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공중의 이익에 손해 가져올 때 부패발생

❖ 부패의 유형

- 백색부패 - 구성원 다수가 용인하는 선의의 부패
- 흑색부패 - 구성원 모두가 처벌원하는 부패
- 회색부패 - 백색과 흑색의 중간(작은호의)

❖ 경찰부패이론

전체사회	• 일손 - 시민사회 부패가 경찰부패 주원인 •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
구조원인	• 니더호퍼, 로버, 바커 •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 - 조직적 원인
색은사과	모집단계에서 배제 X - 개인적 결함

❖ 내부고발(whistleblowing)

- 침묵의 규범과 반대개념
- 내부고발의 정당화 요건(클라이니히)
① 자신의 이견을 표시하기 위한 내부적 채널을 다 사용
② (어느 정도의 / 높은 정도의) 성공가능성

❖ 주의할 용어

- () - 남의 비행에 일일이 참견하여 도덕적 충고 하는 것
- () - 도덕적 해이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 공공기관 - 사립학교, 언론사 포함
- 누구든지 직접, 제3자 통해 공직자들에게 부정청탁금지
- 다음은 부정청탁 아님
① ()적으로 공직자들에게 특정 행위 요구
② ()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
- 부정청탁 받으면 부정청탁 알리고 거절의사 명확히 표시 → 다시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신고
- 직무관련여부, 명목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 ()만원, 1년 ()만원 초과 금품수수금지
- 직무 관련하여 대가성 불문 위의 금액 이하도 수수금지
- 수수금지 X → 수수가능
① ①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함께하는 식사 등) - ()만원
①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 ()만원, 화환 등은 ()만원
① 산물(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경조사비 제외한 일체 물품) - ()만원,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 원재로 50%↑)은 ()만원
② 사적 거래(증여는 ())로 인한 채무이행 등 정당한 권원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③ () 다수인에게 배포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 통하여 받는 보상·상품
- 외부강의 사례금 - 직급상관없이 40만원(1시간기준, 1시간 초과 시 시간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초과금지)
- 사례금 받는 외부강의 - 소속기관장에게 외부강의등 마친 날부터 ()일 이내 서면 신고
- 신고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 받으면 필요한 조사·감사·수사 하여야 한다.
② 조사·감사·수사 마친 날부터 ()일 이내 결과 통보

장정훈 마무리 특강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실무종합

2020.00.00 [토]

담당 : 장 정 훈 교수

cafe.daum.net/tntpolice

- *주의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O, 사실혼 배우자 X
-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식사 제공받고 옆에 있는 카페로 옮겨 6천원 상당의 커피를 다시 제공받았다면 범위반이다.
 - 식사와 커피접대 행위가 시간·장소적 근접성 있어서 1회로 평가
- *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 5만원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됨, 따라서 골프접대는 선물 아님
- * 직무관련자와 식사한 후 1인당 식사비가 5만원 나온 경우 3만원만은 제공자가 결제, 2만원은 공직자등이 결제 - 청탁금지법 위반아님
- * 직무관련자가 식당에 선결제하고 공직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 식사 하게 하는 경우 - 청탁금지법 위반 :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등을 의미
- * 직무관련자가 공직자등의 돌잔치에 와서 5만원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 경조사비는 결혼식의 축의금과 장례식의 조의금 한정, 따라서, 생일, 돌, 회갑, 승진,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처벌
 - ① 직무관련성, 대가성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회계연도 기준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한 공직자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② 직무 관련 대가성 여부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 -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③ 부정청탁 받고 직무수행한 공직자등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④ 외부강의등 초과 사례금 수수 후 신고 X 반환 X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⑤ 제3자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⑥ 제3자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⑦ 제3자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⑧ 제3자 통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에게 부정청탁 - 처벌 X

* 냉소주의와 회의주의

	냉소주의	회의주의
공통점	불신 바탕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 의심 (O / X) • 대상 특정 (O / X) • 개선의지 (O /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 의심 (O / X) • 대상 특정화 (O / X) • 개선의지 (O / X)
* 극복방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맥그리거' 이론 중 ()에 입각한 조직관리 ② 중요 의사결정시 부하의 의견청취 - (상의하달 / 하의상달) <p>* 맥그리거의 인간관 : 인간을 두 분류로 나누어 X이론은 인간을 게으르고, 부정직한 것으로 보아 권위적으로 관리, Y이론은 인간이 책임감 있고, 정직한 것으로 보아 민주적으로 관리</p>	

* 사회계약설에서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

공정한 접근	편들기(동료단속 X), 서비스 해태무시
공공의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력구제금지 • 강도조우 → 그냥 놔둠 • 절도범 등 뒤에서 총을 쏘아 사망케 함
생명·재산 안전 협동	폭주족 단속 중 과도하게 추적 → 운전자 사망 탈주범 혼자 잡으려다 실패
냉정·객관적 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일부분이 아닌 사회전체 이익위해 노력 • 과거경험 → 욕설과 가혹행위

* 경찰윤리강령

- 제정 순서 () (1966) → () (1980) → () (1991) → () (1998)
- 경찰현장의 내용
 - ① 인격 존중, 따뜻하게 봉사 - () 경찰
 - ② 정의 - () 경찰

- ③ 신뢰, 양심 - () 경찰
- ④ 건전한 상식, 성실 - () 경찰
- ⑤ 화합과 단결 - () 경찰

* 경찰청 공무원행동강령

- '경찰관서에 복무중인 전투경찰순경·의무경찰의 부모·형제자매'는 직무관련자에 해당
-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업무의 하급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 해당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 소명하고 지시 안따르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반복되면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상담요청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취소변경필요하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지시한 상급자가 스스로 취소·변경하면 보고 안할수 있음)
-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익제기 관련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 요청().
- 다음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단순민원 업무는 제외)
 - ①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
 - ② ()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
 - ③ 공무원 자신이 ()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
 - ④ 공무원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
 - ⑤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 제공
 - ⑥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비율 이상 주식·지분, 자본금 등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
 - ㉠ 소유주식총수가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 이상 법인·단체
 - ㉡ 소유지분총수가 출자지분총수 100분의 () 이상 법인·단체
 - ㉢ 소유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 100분의 () 이상 법인·단체
 - ⑦ ()만원 이상 금전거래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 ⑧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간 같은 부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
 - ⑨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 ⑩ 최근 ()년 이내 인·허가, 계약체결, 정책·사업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 주었던 자가 직무관련자
- 위의 신고 받은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다음조치 가능
 - ① 직무참여 일시중지
 - ② 직무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 ③ 직무 재배정
 - ④ 전보
- 정치인이나 정당으로부터 부당한 청탁 → ()에게 보고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금지
- 직무관련여부 및 명목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만원 초과 금품수수금지
- 감독기관은 피감기관에 정상적 관행 벗어난 예우·의전 요구 금지 - 부당요구받은 피감기관 공직자는 이행거부해야 하며, 같은요구 반복받으면 피감기관(감독기관 X)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함
- 사례금 받는 외부강의 마친날부터 ()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국가나 지자체가 요청한 경우는 예외)
- 초과사례금 받으면 안날로부터 ()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에게 지체없이 반환
- 초과사례금 반환안한 공무원에게 신고사항 확인 후 ()일 이내 통지 → 공무원은 지체없이 초과금 ()에게 반환하고 ()에게 알려야 함
- 직무관련자 거래신고
 -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이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행위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 포함)에는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신고
 - ㉠ 금전 빌려거나 빌려주는 행위
 - ㉡ 재산 거래 행위
 - ②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위의 행위 하는 경우도 서면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신고(직무수행 종료된

장정훈 마무리 특강



기!역에서 지!워지지 않는 실무종합

2020.00.00 [토]

담당 : 장 정 훈 교수

cafe.daum.net/tntpolice

날부터 () 지난 경우는 제외)

- 직무관련자들에게 경조사 통지금지(친족, 현재나 과거 근무했던 기관 소속직원, 신문·방송·내부통신망, 종교단체·친목단체 등 회원에게는 가능)

장정훈 마무리 특강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실무종합

2020.00.00 [토]

담당 : 장 정 훈 교수

cafe.daum.net/tntpolice

<경찰학 각론>

제1장 생활안전경찰

❖ 범죄예방론

- 범죄요소(J. Sheley) - 범행기술, 사회적 제재로부터 자유, 범행기회, 범행동기
- ① 고전주의(의사비결정론) - 억제이론 - 총동범죄 적용 X
- ② 실증주의(의사결정론) - 치료 및 갱생이론 - 적극적 범죄예방효과 X
 - ㉠ 생애적 범죄인론(롬브로조)
 - ㉡ 범죄포화법칙(페리)
 - ㉢ 자연범과 법정범구별(가로팔로)
- ③ 사회학적 범죄인론 - 사회발전이론 - 개인이나 소규모조직체가 수행 X
 - () : 범죄 부추기는 가치관으로 사회화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문화적 유인에 대한 자기통제 상실이 범죄원인
- 하위문화이론 - 범죄는 하위문화 가치와 규범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밀러), 하류계층 청소년들이 목표와 수단의 괴리로 중류계층에 대한 저항으로 비행 저지되며, 목표달성 어려움 극복위해 자신들만의 하위문화 형성(코헨)
- 중화기술이론 - 자기행위가 실정법상 위법알지만 그럴듯한 구실 내세워 자신의 행위 합리화책인의 부정, 피해발생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높은 충성심에의 호소
 - () - 청소년들이 영화 주인공 모방하고 자신과 동일시
 - () - 청소년의 비행행위는 처벌 없거나 칭찬받으면 반복
- 사회유대이론 - 비행 제지할 수 있는 사회적 통제 결속과 유대 약화가 원인(Hirschi)
 - 애착, 잔념, 참여, 신념
- 견제이론 - 좋은 자아관념(Reckless)
 - ()이론 -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행위의 질적인 면이 아닌 사회인이 가지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한 인식
- 현대적 범죄예방이론

① 상황적 예방이론

- ㉠ 합리적 선택이론 - (결정론적 / 비결정론적) 인간관
- ㉡ 일상활동이론 - 범죄발생요소(범죄자, 범행대상, 보호자 부재), 범죄자 입장에서 범행결정시 고려요소 (가치, 아동의 용이성, 가시성, 접근성), 구체적이고 미시적 분석
- ㉢ 범죄패턴이론 - 범죄는 일정한 장소적 패턴있음

② 환경범죄학

③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	건축물 설계시 가시권 최대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 가능 확대(조명, 조경, 가시권확대 위한 건물 배치)
()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 출입 통제(차단기, 방범창, 잠금장치, 통행로설계, 출입구 최소화)
()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 표시(사적·공적 공간구분, 울타리, 헨스 설치)
()	공공장소(공원, 체육시설 등) 설치, '거리의 눈' 활용(놀이터·공원 설치,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 증대, 벤치·정자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	처음 설계된 대로 기능 지속적으로 유지(청결유지, 파손 즉시보수, 조명·조경 관리)

- ㉣ ()이론(오스카비먼) - 주민들이 자기지역을 자신들 영역이라 생각하고 감시 게을리 하지 않으면 어떤 지역이나 장소든 범죄로부터 안전
- ③ ()이론(로버트샘슨) -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범죄문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가 중요
- ④ ()이론 - 경미한 무질서에 무관용 정책

• Mendelshon의 범죄피해자 유형론

피해자의 유형	피해자 개념	내용
완전히 책임 없는 피해자	순수한 피해자(무자각 피해자)	영아살해에 있어서의 영아, 약취·유인된 유아

책임이 조금 있는 피해자	무지에 의하여 책임이 적은 피해자	무지에 의한 낙태여성, 인공유산 시도하다 사망한 임신부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 있는 피해자	자발적인 피해자	촉탁살인에 의한 피살자, 자살미수 피해자, 동반자살 피해자
가해자보다 더 책임 있는 피해자	피해자의 행위가 범죄자의 가해행위를 유발시킨 피해자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자, 부모에게 살해된 패륜아
가장 책임이 높은 피해자	타인을 공격하다 반격을 당한 피해자	공격을 가한 자신이 피해자가 되는 가해적 피해자, 무고죄의 범인 같은 기만적 피해자

❖ 경비업법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경비 • 호송경비(운반) • 신변보호 • 기계경비(경비대상시설 ()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 • 특수경비(공항(항공기 ()))
집단민원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 있는 장소 • 특정 시설물 설치와 관련 민원 있는 장소 •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 있어 다툼 있는 장소 •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 있어 다툼 있는 장소 • ()명 이상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 •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 배치시 경비지도사 선임·배치하여 경비원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함 * 집단민원현장에 ()명 이상 경비인력배치하려면 직접고용 아니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 도급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만 가능 • ()의 허가 • 유효기간 - 허가받은 날부터 ()년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 폐업·휴업 •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임원 변경 • 법인 주사무소나 출장소 신설·이전·폐지 • 기계경비업무 수행 위한 관제시설 신설·이전·폐지 • 특수경비업무 개시·종료 * 도급받은 경비업 종류 변경 - (허가 / 신고)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지역경찰관서장 직무 - 분석, 홍보, 관리, 제반사항
- 112순찰근무와 야간순찰은 반드시 2인 이상 합동, 경계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

• 문서의 접수 및 처리 - ()근무
• 시설 및 장비의 작동여부 확인 - ()근무
• 시설·장비의 관리 및 예산의 집행 - ()근무
•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 ()근무
• 주민여론 및 범죄정보 수집 - ()근무
• 불순분자 및 범법자 등 색출을 위한 통행인 및 차량, 선박 등에 대한 검문검색 및 후속조치 - ()근무
• 경찰사범의 단속 및 검거 - ()근무
• 경찰방문 및 방법진단 - ()근무
•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감시 - ()근무
• 중요 사건·사고 발생시 보고 및 전파 - ()근무
•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및 보고, 전파 - ()근무
• 비상 및 작전사태 등 발생시 차량, 선박 등의 통행 통제 - ()근무
• 통행인 및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등 - ()근무

장정훈 마무리 특강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실무종합

2020.00.00 [토]

담당 : 장 정 훈 교수

cafe.daum.net/tntpolice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풍속영업의 종류 - 게임, 비디오감상실, 노래,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학원 및 무도장
- 풍속영업자 - 무허가업자도 포함
- 풍속영업소에서 조사 경찰의 출입 거부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처벌 X
- 풍속영업자 준수사항은 실제영업에 따라 정해짐
- 성매매알선등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음란행위, 사행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관련판례
- ① 나이트클럽 무용수 겹옷 모두 벗고 성행위와 유사한 동작연출 - 음란행위 O
- ②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 위성방송프로그램 투숙객에게 시청하게 한 행위 - 음란한 물건 판매하게 하는 행위 O
- ③ 호텔에서 파일재생장치 설치 투숙객에게 비밀번호 알려줘 저장된 음란동영상 관람하게 한 행위 - 음란한 물건 판매하게 하는 행위 O
- ④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이 웃옷벗고 브레지어만 착용 - 음란행위 X

❖ 식품위생법

- 음식류 조리·판매보다 주로 주류 조리·판매 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 - 일반음식점
- 유흥종사자 - 손님이 직접 타겟팅 부르고 티켓비를 직접 지급했다더라도 업주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용인하였다면 유흥종사자 둔 경우에 해당

❖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외에 청소년 출입 아니하도록 할 것
- 주류 판매·제공 금지
- 접대부(남녀불문) 고용알선금지
- 영리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의 유흥을 돕는 접객행위하거나 타인에게 알선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청소년 - 18세 미만(고등학생 포함)
- 경품제공금지(단, 청소년게임제공업에서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허용)
- 일반게임제공업은 청소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신고 - 포상금 지급가능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 - 불특정인 상대, 대가관계, 성교·유사성교행위
- 성매매알선등행위 - 성매매 알선·권유·유인·강요, 장소 제공, 알선서 자금·토지·건물 제공
- 성매매알선하고 성매매에 이용되는 건물제공 - 포괄일죄 아님
- 성매매피해상담소장 등이 업무관련 성매매 피해사실 알게되었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의무부과 → 위반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처벌근거없음

❖ 경범죄 처벌법

- 형 면제(감경 X, 감경 X, 가중 X) 하거나 구류와 과료 병과 가능
- 죄 범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정범에 준하여 벌함
-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 방, 광, 표, 출
-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 관공서 주취소란과 거짓신고 (주거분명해도 현행범체포 가능)
- 범칙행위 - 10만원·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행위
- 범칙자 X - 18·피·구·상
- 범칙금 납부 - 10일(5일), 20일, 20/100, 50/100, 50/100
- 범칙금 미납시 지체없이 즉심청구 하여야 함
- 즉심청구된 피고인이 선고 전까지 납부하면 즉심청구 취소하여야 함
- 지하철선교,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 불상자 따라 다닌 경우 - 경범죄 X

- 범칙금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가능하나 분할납부는 불가
- 연령상 경찰훈방대상 - ()세 이상 고령자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총포 -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업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가스 이용하는 것 포함)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도검 - 칼날 길이가 () 이상인 칼감창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 길이가 ()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화약류 - 화약·폭약 및 화공품
- 제조업
- ① 총포·화약류 - 경찰청장, 그 외 - 지방청장 허가
- ② 제조업결격사유
- ③ () 이상 실형 선고받고 집행끝난 후 ()년 미경과
- 소지
- ① 총포 소지허가
- ① 원칙 - 지방경찰청장 ① 예외 - 서장(엽·기·가스·마·산·살·구)
- ② 소지허가 결격사유
- ③ 이 법 위반하여 ()을 신고받고 ()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이 법 위반하여 ()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 지나지 아니한 자
- 화약류사용 - 사용장소 관할 ()의 허가
- 화약류 폐기 - ()에게 신고
- 화약류 운반 - 발송지 경찰서장에게 신고(운반개시 ()시간 전까지)
- 총포 등 습득, 발견 - ()시간 이내 경찰관서에 신고
-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허가 받은 날부터 ()이내 시설·설비에 대하여 허가관청 검사받아야 하며, 검사 합격한 후 아니면 업무시작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 사용금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 ()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 연장가능
-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설계도 등을 정보통신망에 유포 - ()년 이하 징역 또는 ()만원 이하 벌금

❖ 유실물법

- 보상금 -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공공기관은 보상금 청구 X
- 보상금 청구불가능한 경우
- ① 7일 이내 신고 X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습득한 경우
- ③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받은 자
- ④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물건 습득한 경우
- 물건 매각가능
- ① 보관한 물건 멸실 우려 ② 보관할 물건 훼손우려,
- ③ 보관에 과다한 비용사용 ④ 보관에 불편수반
- 관리자 있는 건축물 내에서 타인물건 습득한 자는 관리자에게 인계 - 보상금은 절반
- 공고 후 6개월 내 소유자가 권리주장 안하면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 소유권 취득 후 ()개월 지나도록 물건수취 안하면 소유권 상실
- 유기동물 - 동물보호법

❖ 청소년 연령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
- 청소년보호법, 아동법 - 청소년(19세 미만,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맞이한 사람은 제외)
- 음악산업법, 게임산업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 청소년(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 포함))
-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법, 아동학대법 - 아동(18세 미만)
- 다문화가족지원법 - 청소년(24세 이하)

장정훈 마무리 특강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실무종합

2020.00.00 [토]

담당 : 장 정 훈 교수

cafe.daum.net/tntpolice

❖ 청소년보호법

1. 청소년유해업소 - 실제영업행위 기준

고용X, 출입X	고용X, 출입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동게임제공업 사행행위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은 출입 허용)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전화방, 화상전화방 성적 서비스제공업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에 따른 장외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게임제공업 티켓다방 주로 주류판매·소주방·호프·카페 비디오물() 유해화학물질영업 만화대여업

2. 청소년유해행위

- ① 청소년이용 성적 접대행위 -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 ② 영리목적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 유흥 돈우는 접객행위
 - ③ 청소년에게 음란행위 하게 하는 행위
 - ④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 모습을 일반인에게 관람
 - ⑤ 청소년에게 구걸 시키거나 청소년 이용 구걸
 - ⑥ 청소년 학대
 - ⑦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 유인하는 행위
 - ⑧ 청소년을 남녀 혼숙(일방이 청소년이면 범위반)
 - ⑨ 다방에서 청소년에게 영업장 벗어나 차 종류 배달하는 행위 하게 하는 행위
- * 청소년으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통행하게 하는 행위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행위 (O / X)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미수처벌
- 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②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 ③ 아동·청소년 ()
- ④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 ㉠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 선불금, 그 밖의 채무 이용하는 등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 받는 것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 13세 미만 아동 강간, 강제추행
 - 법정형 중한 ()으로 처벌
- 신고의무자 성범죄 - 죄에 정한 형의 ()까지 가중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대가관계, 성교, 유사성교, 신체 전부·일부 접촉·노출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 성폭력범죄 범한 때는 심신장애자, 능자자 감면규정 적용하지 아니()
- 공소시효 - 성년 된 날부터 진행, DNA 등 과학적 증거 있으면 ()연장, ()미만, 장애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 등은 공소시효 X, 강간 등 살인도 공소시효 X
- 친권상실 - 검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법원에 친권상실신고·후견인 변경결정 청구()
- 피해자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녹화장치로 촬영·보존 () - ()나 ()이 원하지 않으면 촬영 X
-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범한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 범죄신고 한 사람 - 포상금 지급()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18세 미만 아동 •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 치매환자
보호시설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보호자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 친권자, 후견인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 있는 사람,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

2. 직무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 알게 되었을 때 경찰신고체제로 신고할 의무 있는 사람 - 업무관계 없이 아동보호 하는 자 X
3.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실종아동등 보호,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 찾기 위한 목적 외 용도로 이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4. 실종아동등 발생 신고접수시 () 수색·수사 실시여부 결정
5. 경찰관서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 ())의 조속 발견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위치정보 제공요청가능 - 동의 없이 위치정보 수집가능, 동의 없음 이유로 요청거부 X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

1. 정의

보호실종 아동등	실종아동 등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등
장기실종 아동등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지 ()시간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 실종 아동등
가출인	()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세 이상 사람
발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전 최종목적지였다고 신고자등이 진술한 장소 • 신고자 등이 최종 목적 장소 진술 X, 목적지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실종·가출 발생 후 ()개월 경과 - 실종 전 최종 주거지
발견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실종아동등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 ② 발견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다른 경우 - 보호중인 장소
강력범죄	살인·강도·변사사건 등을 말하며, 약취·유인·체포·감금은 제외

2. 정보시스템

- 생활안전국장은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및 실종아동찾기 센터홈페이지(인터넷안전드림) 운영
- ()은 경찰관서 내에서만 사용, ()은 누구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등 분리운영
- 경찰관서장은 ()에 업무담당자등 필요 인정되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부여하는 등 방법으로 통제관리
- ()은 실종아동등 신고 또는 예방홍보 등과 관련된 정보제공

3. 프로파일링시스템입력대상

- 실종아동등, 가출인, 보호시설입소자중 보호자 확인되지 아니한 사람(무연고자)

4. 프로파일링시스템 입력제외대상

- 채무 등 다른 목적, 지명수배·지명통보, 허위, 보호자동행 등

5. 자료보존기간

- ①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 : ()년간
- ② 발견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 및 치매환자 : ()년간
- ③ 미발견자 : 소재 발견 시까지
- ④ 보호시설 무연고자 : 본인 요청 시 즉시 삭제

장정훈 마무리 특강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실무종합

2020.00.00 [토]

담당 : 장 정 훈 교수

cafe.daum.net/tntpolice

-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해제
소재발견, 보호실종아동등 신원확인하거나 보호자 확인, 허위오인 신고, 지명수배지명등보 대상자임이 확인, 보호자가 해제요청(진위여부 확인)
- 실종아동등 신고는 **관할 관계없이** 실종아동찾기센터, 각 지방청, 경찰서에서 전화, 서면, 구술 등 방법으로 접수
- 실종아동등은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록일부터 1월까지는 ()일에 1회, 1월 경과한 후 부터는 ()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 통보

제2장 수사경찰

❖ 수사의 조건

수사개시	㉠ 수사기관의 () 혐의에 의하여 개시 ㉡ 구체적 사실 근거
체포·구속	증거가 뒷받침(일반인 기준 인정 X)되는 () 혐의가 요구

❖ 수사실행의 5원칙(완전·감식·추·검·사)

-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 적절한 추리의 원칙
- 검증적 수사의 원칙
-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 내사

- 내사단계에서는 **영장에 의한 체포·구속은 원칙 허용되지 않음. 대물적 강제는 허용**
- 진정내사의 착수 - ()의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
- 내사의 종결 등
 - ()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에 해당하여 수사개시 필요 없는 경우
 - () :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시까지 내사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공람종결할 수 있는 사유
 - () 이상 반복 진정하여 ()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과 같은 내용인 경우
 -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수사의 종결

①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고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② 명백히 혐의없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① 형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②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③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해산된 경우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①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 수사의 단서

수사기관의 체험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 검시, 불심검문, 신문·출판물·풍설 등
타인의 체험	고소·고발, 자수, 피해신고(익명신고 포함), 투서 등

❖ 범죄정보의 특징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선별적 가치를 가진다.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범죄정보는 다른 사건정보가 서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범죄정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

❖ 수사정보수집 및 처리규칙

- 평가책임자는 제출된 수사정보 () . 다만, 수사목적상 필요할 경우 **수사정보분석시스템상에서** 공유 가능.
- 모든 수사정보는 **수사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하여 처리
- 수집된 수사정보는 ()에서 처리하는 것 원칙. 다만 어느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 .
- 이송을 하는 수사정보 평가 및 처리는 () 평가 책임자가 담당
- 수사정보에 의해 사건해결, 중요범인 검거시 수사정보 **제출자**를 사건해결자 또는 검거자와 동등하게 특별승진,포상 가능

❖ 변사자검시

- 사경관이 검시하는 경우 검시 관련 공무원 참여() . 참여한 검시조사관은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작성
- 경찰관은 검시에 특별 지장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 등 **필요한 자를** 참여() .
- 사경관은 검시한 경우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에게 보고 및 동시에 수사 개시
- 사경관은 변사체 검시 결과 사망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명백히 인정되면 **검사 지휘** 받아 소지품등과 시체를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
- 변사체는 후일을 위하여 ()함을 원칙으로 한다.

❖ 피의자 신문

-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1인 지정**, 지정 없으면 검사·사경관이 지정할 수 있다.
- 피의자의 진술은 **미리 영상녹화** 사실 알려주어 영상녹화할 수 있고, 전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 (피의자의 동의 X, 다만 **피고인 아닌 자는 동의 받아야 영상녹화 가능**)
- 피의자가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전달 능력 미약한 경우 검사 또는 사경관은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인정신문때 직업은 ()당시 직업 기재
- 피의자가 **이의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 신문중이 변호인 참여제한 - 경찰관은 변호인 참여로 인하여 다음 사유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 참여 제한가능
 - 경찰관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 개입
 - 모욕적인 말과 행동 하는 경우
 - 피의자 대신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변복 유도
 - 형소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 하는 경우(부당하게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X)

❖ REID 9단계 신문기법

- 범죄자의 일반적 유형
 - 감정적 범죄자 - ()적인 신문 전략이 효과적
 - 비감정적 범죄자 - **사실적 분석 전략과 기법**이 효과적
- 스트레스 반응 단계 - 분노 → 우울 → 부인 → 거래 → 수용
- 9단계 신문방법
 - 직접적 대면 → ② 신문 화제의 전개 → ③ 부인(否認) 다루기 → ④ 반대논리 격파 → ⑤ 관심 이끌어내기 → ⑥ 우울한 기분 달래주기 → ⑦ 양자택일적 질문하기 → ⑧ 세부사항 질문 → ⑨ 구두 자백의 서면화

장정훈 마무리 특강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실무종합

2020.00.00 [토]

담당 : 장 정 훈 교수

cafe.daum.net/tntpolice

❖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1. 용어정의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저장되거나 네트워크 및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
	전자정보를 수집·보존·운반·분석·현출·관리하여 범죄사실 규명을 위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적인 절차와 기술
	범죄와 관련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
	전자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을 목적으로 반출의 대상이 된 정보저장매체등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 / 일부)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의 기술적 방법으로 별도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한 것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관에게 분석 의뢰된 전자정보,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복제본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를 받고 이를 수행하는 사람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와 분석결과 회신 등을 포함한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전산시스템

2. 디지털증거수집

- ①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시 전자정보와 정보저장매체등을 구분하여 판단
- ② 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휴대한 정보저장매체에 해당 전자정보만을 복제하는 방식**(이하 "선별압수"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경찰관은 피압수자 등이 협조 않거나, 협조 기대할 수 없는 경우등의 사유로 인해 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 선별압수 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목적 달성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복제본 획득하여 외부로 반출후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 진행가능**
- ④ 획득한 복제본 반출하는 경우에는 복제본 해시값 확인하고 피압수자 등에게 전자정보 탐색 및 출력·복제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확인·서명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압수자 등의 확인·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는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
- ⑤ 경찰관은 압수·수색·검증현장에서 영장 집행현장에서 하드카피·이미징 등 복제본 획득이 물리적·기술적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등 사유로 복제본 획득·반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목적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외부로 반출한 후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 진행가능**

❖ 통신수사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 ① 각 ()별 또는 각 ()별
 - ② 기간은 () 초과 금지. 소명자료 첨부하여 () 범위에서 연장 청구 가능. 총 연장기간은 () 초과금지(내란·외환죄 등은 3년 초과금지)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 ① 통신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 - ()의 허가
 - ② 적대국, 반국가활동협이 있는 외국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 집단이나 외국소재 그 산하단체 구성원의 통신인 때 및 군용전기통신 - ()의 승인
 - ③ 기간은 (), ()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긴급통신제한조치
 - ① 긴급한 사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 가능
 - ② 검사 지휘 원칙, 급속 요하면 착수 후 () 검사 승인

- ③ 집행한 때부터 () 이내 법원허가. 허가 못받으면 즉시 중지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및 통지
 - ①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 표지 사본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 위탁 - ()년 이하 징역
 - ② 통신제한조치 청구한 목적과 집행 또는 협조일시 및 대상 기재한 대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년)동안** 비치
 - ③ 검사로부터 공소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 ()의)의 통보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 이내 집행사실 서면 통지
 - ④ 위 내용 통지하지 않으면 ()이하 징역 또는 ()이하 벌금

❖ 송치서류

- 편철순서 : 사건송치서-압수물총목록-기록목록-의견서-그 밖의 서류
- ()가 2장 이상일 때는 1-1, 1-2, 1-3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의견서와 그 밖의 서류에만 각 장마다 면수 기입.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에는 면수 기입하지 않음
- 피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피의자를 1, 2, 3 순으로 표기**
- 피의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명 다음에 괄호 하고 대표자 성명 기재
- 피의자들의 성명을 1장에 표시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이용하고 생략금지
- 죄명은 **가·나·다 순으로 표시, 법정형이 중한 순으로 표시**
- 처벌규정, 금지규정이 별도인 경우 양자 모두 기재하되 **처벌규정, 금지규정 순으로 기재**
- 형법총칙 규정은 공범 → 상상적 경합 → 누범 → 경합범 → 필요적 물수의 순으로 기재
- 임의적 물수(필요적 물수 X), 임의적 감경·감면 규정, 추징 등의 규정은 기재하지 않는다.

❖ ooo법위반 다음에 ()하고 죄명 구분표시하는 특별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국가보안법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국민체육진흥법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별법
- 수산업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별법
- 공연법
- 화학물질관리법
- 아동복지법
- 한국마사회법

❖ 현장 관찰

- 현장 관찰의 순서
 - 현장위치파악 → 부근상황관찰 → 현장외부관찰 → 현장내부관찰
- 현장 관찰 기록
 - 공간 특정 위하여 기록해 둘 사물은 고정된 물건 ()개 이상 선정하고, 그 물건 기준으로 정확하게 측정하여 명백히 기록

❖ 수법수사(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 수법원지 전산입력
- 피의자 검거 또는 인도받아 조사하여 구속 송치할 때에는 경찰시스템 활용하여 수법원지를 전산입력하여 경찰청장에게 전산송부. 다만 불구속

장정훈 마무리 특강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실무종합

2020.00.00 [토]

담당 : 장 정 훈 교수

cafe.daum.net/tntpolice

피의자도 재범 우려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작성()

- 범행(수법)개요는 피의자의 주된 범행수단과 방법이 부각되도록 상세히 입력
- 당해 범죄의 피의자가 즉시 검거되었거나 정확한 신원이 판명된 경우는 피해통보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피해통보표는 반드시 당해 사건 담당하는 수사경찰관이 전산 입력
- 수법일지 삭제
 - ① 피작성자가 사망하였을 때
 - ② 피작성자가 ()세 이상이 되었을 때
 - ③ 동일한 원지가 2매이상 중복될 때 1매를 제외한 자료
- 피해통보표 삭제
 - ① 피의자 검거되었을 때
 - ② 피의자 사망하였을 때
 - ③ 피해통보표 전산입력 후 ()년이 경과하였을 때

❖ 유류품 수사

동일성	유류품이 직접 범행에 사용된 것인가를 검토 ① 물건의 존재가 명확할 것 ② 물건의 특징이 합치될 것 ③ 유류상황과 진술이 합치될 것 ④ 흉기 등의 경우 상해의 부위와 합치될 것
관련성	유류품이 범인의 물건이 확실한가를 검토 ① 범인이 유류품 및 그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것과 동종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을 것 ② 유류품에 존재하는 사용버릇을 가진 인물일 것
기회성	범인이 현장에 유류할 기회가 있었는가를 검토 ① 범인이 현장에 갈 수 있었을 것 ② 유류의 기회가 있었을 것 ③ 범인이 범행시각에 근접하여 현장 및 그 부근에 있었을 것
완전성	유류품이 범행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가를 검토 ① 유류품이 범행 때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

❖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 우범자 선정
 - ① 범죄단체 조직원 또는 조직성폭력배 중 죄를 범할 우려 있는 사람
 - ② 살인, 방화, 약취유인, 총기 제조·이용 범죄로 ()형 이상 실형 받고 출소한 사람
 - ③ 강도·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회 이상 ()형 이상 실형 받고 출소한 사람
 - ④ 폭파협박 범죄로 ()회 이상 ()형 이상 형 선고 받은 사람
- 우범자 사망 또는 편입 후 다음 기간동안 죄 범하지 않고 기간 경과하여 재범 위험성 없어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는 심사위원회 의결 거쳐 삭제
 - ① 3년 초과 실형 후 출소하여 우범자에 편입된 사람 - ()년
 - ② 3년 이하 실형 후 출소하여 우범자에 편입된 사람 - ()년

❖ 과학수사

1. 지문

- 현장지문 -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현재지문(정상지문, 역지문), 잠재지문]
- ()지문 - 침입경로, 도주경로, 예비장소 등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
- ()지문 - 현장-준현장지문 중 범인 이외의 자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
- ()지문 - 현장-준현장지문 중 관계자 지문 제외하고 남은 지문
- 지문 채취방법
 - ① 현재지문 - 사진촬영, 전사법, 실리코너버법(먼지지문)
 - ② 잠재지문 - 고체법, 액체법, 기체법 등
- 지문의 종류 - 공상문, 제상문(말 발굽 모양의 제상선으로 형성 되고 용선이 흐르는 반대측에 삼각도가 1개 있는 지문), 와상문(와

상선, 환상선, 이중제상선, 제상선 기타 용선이 독립 또는 혼재되어 있는 ()개 이상 삼각도 있는 지문. 단, 유태제형 와상문은 삼각도가 ()개)

- 모든 사물은 접촉할 때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 ()의 원리
- Moritz의 공식은 직장은도로 사후경과시간 추정

2. 시체 현상

- 초기현상
 - ① 시체열록 - 주위 온도가 ()수룩 빠르게 형성
 - ② 시체 굳음
 - ⑦ Nysten 법칙 : 턱 → 어깨 → 팔, 다리 → 발가락, 손가락
 - ⑧ 턱관절부터 굳어져 사후 12시간 정도엔 전신까지
 - ③ 각막혼탁 - 사후 ()시간 전후 흐려져서 ()시간 되면 현저하게 흐려지고 ()시간 되면 불투명
- 후기현상
 - ① 자가용해 : 체내에 있는 각종 ()가 작용(세균 X)
 - ② 부패 : 온도는 ()°C, 습도는 ()% 일 때 최적
 - ③ 백골화 : 성인 사체는()년 후 소아사체는()년 후완전 백골화

3. 과학수사 기본규칙

- () - 현장에 남아있는 증거 수집하여 재구성하는 활동
- () - 과학수사를 통해 얻은 증거물이 증거능력 가질 수 있도록 매 단계 이력이 관리되는 것
- () - 변사체 및 주변환경 파악하여 전문 지식에 따라 범죄 여부 판단하는 과학수사요원
- 과학수사요원은 피검사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폴리그래프검사 실시할 수 있고, 피검사자가 검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검사를 ()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수형인’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 총괄 - ()
- ‘구속피의자’, ‘범죄현장’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 총괄 - ()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는 영장 필요(동일한 경우에는 영장없이 가능 - 서면동의)
- 데이터 베이스에 수록한 때에는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를 지체없이 폐기
-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 다만 무죄 판결을 하면서 ()를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

❖ 유치장

- 관리책임
 - ① 경찰서장 - 전반적인 지휘·감독, 책임
 - ② 경찰서 주무과장 - 서장 보좌하여 경찰관(유치인보호관)을 지휘·감독, 피의자 유치 및 유치장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짐
- 동시에 ()명 이상 입감 시킬 때는 () 이상 경찰관이 임회하여 순차적 입감
- 신체검사
 - ① () - 외부를 눈으로 확인 및 가볍게 두드려 검사
 - ② () - 속옷 벗지 않고 위험물 등 은닉여부 검사
 - ③ () - 속옷 벗고 위험물 등 은닉여부 검사
- ()세 이상 사람과 ()세 미만 사람은 분리 유치
- 경찰서장은 유치인보호관에 대하여 ()회 이상 정기교양

❖ 호송

- ()호송 -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으로 다른 곳에 수용하기 위한 호송
- 호송관 5~10인 : () 1인, 호송관 11인 이상 : () 1인
- 피호송자 신체검사는 반드시 ()에 실시
-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는 포박한 후 ()인 내지 ()인을 1조로 하여 연결시켜 포송
- 호송은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할 수 없다.
- 피호송자 사망 또는 발병한 때 비용은 ()가 부담
- 피호송자 숙박시킬 사유 있으면 체류지 관할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를 이용

장정훈 마무리 특강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실무종합

2020.00.00 [토]

담당 : 장 정 훈 교수

cafe.daum.net/tntpolice

- 금전, 유가증권은 호송관에서 인수관서에 직접 송부. 물품은 호송관에게 탁송
- 호송근무시 분사기를 휴대()
- 호송관의 장은 특별한 경우 호송관이 총기를 휴대 하도록 ()
- 호송시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은 ()에서 보관
- 호송 중 발병
 - ① 경증 : 호송에 큰 지장 없고 당일로 마칠 수 있으면 호송관이 응급조치 취하고 호송 계속
 - ② 중증 : 호송 곤란하다 인정되면 발병지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 인수한 경찰관서는 즉시 질병 치료하고 **질병상태 호송관서 및 인수관서에 통지. 치유된 때에는 ()에 통지 및 치료한 경찰관서에서 지체없이 호송.** 다만, 24시간 이내 치료 가능하다면 치료 후 호송관서의 호송관이 호송.

❖ 수배제도

- 지명통보
 - ① **법정형 장기 ()년 미만** 징역-금고 또는 벌금 해당 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수사 결과 소재불명인 자
 - ② **법정형 장기 ()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 인정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 불응하고 소재불명인 자
 - ③ (), (), ()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 받는 자로서 ()이고 그 피해액이 ()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④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자
- 지명수배
 - ①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 ② 지명통보대상인 자로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 ③ 긴급사건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 의뢰한 경우
- **현행 법률상 지명수배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규정 (있다 / 없다).**
-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
 - ① 지방청장은 지명수배-통보한 후 ()경과하여도 검거 못한 자들 중 매년 ()월과 ()월 연 2회 선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대상자 보고
 - ② 경찰청장은 공개수배위원회 개최하여 대상자 선정하고 매년 ()월 ()월 전국에 공개수배
 - ③ 경찰청 공개수배 위원회
 - ㉠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상 11명 이내 성별 고려하여 구성. 외부전문가 포함하여야 한다.
 - ㉡ 위원 5인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자'와 '대상자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후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자와 처벌이 동일(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
-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단순한 간음한 경우 -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적용 (O / X)**
-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고소가능
- **형법상 감경규정 특례나 공소시효는 아청법과 동일**
-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사법경찰관 지정하여 () 조사하게 ()
- 피해자가 ()미만, 신체·정신적 장애 있는 경우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 보존 ()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못함.
- 피해자증인신문시 신청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 동석하게 ()
- 피해자가 ()세 미만,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 미약한 경우는 전문가에게 피해자 심리 상태 진단조건 등을 **조회하여야 함**
- 피해자가 ()세 미만,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변별·의사결정능력 미약한 경우 진술조력인 두어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용어

가정폭력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수반
가정구성원	배우자(사실혼포함), 직계존비속, 계부모와 자, 적모와 서자, 동거하는 친족
범죄	폭포 모욕 유명학사 공손수강협상, 성범죄
가정폭력 행위자	가정폭력범죄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
피해자	직접적 O, 간접적 X
아동	18세 미만

2.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응급조치(경찰)	임시조치(법원 → 가해자)
• 제지, 분리 및 수사	• 퇴거 등 격리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피해자 동의 필요)	• 100미터이내 접근금지
• 의료기관인도	• 전기통신 접근금지
• 임시조치 신청 통보	• 의료기관, 요양소위탁
	• 유치장 유치

3. 고소

- ①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 고소가능.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 범한 경우는 피해자 친족이 고소가능
- ② 직계존속도 고소가능
-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 고소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5. 사건송치 : 사경관은 가정폭력범죄 수사하여 사건 검사에 송치. 사경관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제시가능
- 6. ()는 가정폭력범죄로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는 피해자의 의사 존중

- 7. 긴급임시조치 : 사경관은 긴급하여 **법원의 임시조치결정 받을 수 없을 때** 직권 또는 신청으로 '긴급임시조치'가능 →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청구(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시간 이내에 청구)

❖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1. 정의

- ① 아동 - ()세 미만
- 2. 아동학대범죄는 이법 우선적용. 다만,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아청법에 서 가장처벌되는 경우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3. 응급조치(()시간 초과 X)

• 아동학대행위 제지
• 행위자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 보호시설로 인도(아동의사 존중)
• 의료기관으로 인도

4. 임시조치

•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 제한 또는 정지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상담 및 교육 위탁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 위탁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5. 사경관이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한 때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 →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응급조치 후 () 이내 임시조치청구, 긴급임시조치 후 ()이내 임시조치 청구)

장정훈 마무리 특강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실무종합

2020.00.00 [토]

담당 : 장 정 훈 교수

cafe.daum.net/tntpolice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이용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 수반하는 행위
-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등 누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요건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
- 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 ②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 증거
- ③ 국민의 알권리보장,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 위하여 필요할 것
- ④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마약류

1. 마약류의 분류

양귀비, 생아편, 몰핀, 코데인, 테바인, 코카인, 크랙
코데날, 코데잘, 코데술, 유코데, 세코날(처벌 X)
페치딘계, 메사돈계, 프로폭시펜, 아미노부텐, 모리핀
헤로인, 히드로모르핀, 옥시코돈, 하이드로폰

2.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

메스암페타민(히로뽕), 암페타민류
L.S.D, 페이요트, 사일로사이빈, 메스카린
바르비탈염계류제, 벤조다이아핀계제

3. 주요 향정신성 의약품

- 엑스터시 - 독일에서 식용감퇴제로 개발, 클럽마약, 포옹마약
- 러미나 - 덱스트로메트로판. 의사 처방전으로 구입가능,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나 의존성과 독성은 없음. 정글주스
- LSD -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 무색·무취·무미, 환각제중 가장강력. 플래쉬백현상. 내성이나 심리적 의존성 있지만 금단증상은 없음
- 아바 - 동남아시아, 카페인 등에 필로폰 혼합하여 순도 낮음
- GHB - 무색·무취·짠맛, 데이트강간 약물
- 카리소프로돌(스정) - 금단증상으로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트리며 허포부라지는 소리

❖ 사이버범죄의 유형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해킹, 서비스거부공격(DDos등), 악성프로그램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인터넷 사기, 사이버금융범죄(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뭉폼피싱 등), 개인·위치정보 침해, 사이버 저작권 침해, 스팸메일 등
불법콘텐츠 범죄	사이버음란물, 사이버도박,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스토킹

제3장 경비경찰

❖ 경비경찰 일반론

1. 경비경찰의 대상

인위적이거나 자연적 혼잡재해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재난경비
개인적·단체적 불법행위	치안경비, 대테러경비(특수경비), 경호경비, 중요시설경비

2. 경비경찰활동의 특성

즉응적, 복합기능적, 현상유지적(보존 - 동태적·적극적 의미), 사회전반적 안녕목적, 조직적 부대, 하향적 명령

3. 경비경찰의 조직운영의 원칙

부대단위, 지휘관단일(의사결정과정 단일 X), 체계통일, 치안 협력성

4. 경비경찰의 수단

(1) 수단의 종류(정해진 순서 없음)

- 경고(간접적) - 경직법
- 제지(직접적, 즉시강제) - 경직법
- 체포(직접적) - 형소법

(2) 수단의 원칙 - 균형(한정 X), 위치, 시점(적시), 안전

❖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 미조직적 군중 대상
- 군중정리원칙 - 밀(사전블록화), 이(일정방향), 경(차분한 목소리), 지(자세한 안내방송)
- 재해대처계획 - 시장등에게 신고(시장등은 소방서장에 통보 : 미신고시 () 이하 과태료
- 공연장 외에서 () 이상 관람예상 - 재해대처계획 신고(()전까지, 변경신고는 () 전까지)

❖ 선거경비

- 비상근무
 - 선거기간개시일~선거전일 : 경계강화
 - 선거일(06:00)~개표종료시 : 갑호비상
- 선거기간
 - ① 대통령선거 - 23일(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 ② 그 외선거 - 14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 대통령후보자 - 유희대상
- 대통령당선자 - 갑호대상
- 신변보호기간 - 후보자등록시부터 당선확정시까지
-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경호 원하지 않더라도 경호경험있는 자로 선발된 직원 항상 대기시켜 유세 기간 근접 배치
- 국회의원 후보자의 신변보호는 각 선거구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후보자가 원할 경우 신변보호요원 적정 수 배치
- 개표소경비
 - ① 선관위 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 질서유지 위하여 정복 경찰 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 요구 → 경찰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함(위의 경우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등 소지금지)
 - ② 개표소 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위원장 지시 받으며, 질서회복 되거나 위원장 요구시 즉시 퇴거

❖ 재난경비

1. 재난관리체계

- 예방단계 - 정부합동안전점검, 재난관리체계 등 평가활동
- 대비단계 - 각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 작성, 재난분야 위기 관리 매뉴얼작성, 재난 대비훈련
- 대응단계 - 응급조치, 긴급구조
- 복구단계 - 재난피해조사, 특별재난지역 선포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용어
 - ① 재난 - ()
 - ② 재난관리 - 재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 ③ 안전관리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 안전 확보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 ④ 안전취약계층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총괄·조정 - ()장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행안부(본부장 - ()), 해외재난은 ()
- 재난사태 선포 - ()
- 특별재난지역 선포 - ()

장정훈 마무리 특강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실무종합

2020.00.00 [토]

담당 : 장 정 훈 교수

cafe.daum.net/tntpolice

3. 경찰재난관리규칙

- 경찰청 재난대책본부장 - 경비국장
- 재난발생 가능 정도에 따라 4단계 구분. 심각단계에는 반드시 재난 상황실을 설치·운영. 다만, 그 밖의 단계에는 ()이 설치·운영 가능
- () - 활동수준 낮아서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 적은 상태
- () - 재난발생 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
- () - 재난발생 징후의 활동이 활발
- () -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의 발생이 확실시
- 재난관리 업무총괄 - 경비국
- 경찰관서 피해복구 업무 및 자체 경비 - ()
- 재난지역 주민대피 지원 - 생활안전국

❖ 국가중요시설경비

1. 중요시설지정
 - ()이 관계행정기관장 및 ()과 협의하여 지정
2. 방호
 - ① 관리자(소유자포함)는 자체방호계획수립하여야 함. 필요시 지방청장과 지역군사령관에 협조요청가능
 - ② 지방청장, 지역군사령관 - 방호지원계획수립시행 하여야 함
 - ③ 평시 경비보안활동 지도·감독 - 관계행정기관장과 ()

❖ 다중범죄진압경비

- 다중범죄특징 - 부, 비, 확(투신, 분신), 조
- 정책적 치료법 - 선수승화법, 잔이법, 지연정화법, 경쟁행위법
- 진압기본원칙 - 봉쇄방어, 차단배제(중간차단), 세력분산, 주동자격리
- 진압 3대원칙 - 신속한 해산, 주모자 체포, 재집결 방지

❖ 경호경비

- 경호경비 4대원칙 - 하, 자, 담, 보
- 행사장경비

 - ① 1선(안전구역) - 출입자통제관리, MD설치, 비표확인·출입자감시
 - ② 2선(경비구역) - 바리케이드, 예비대운영, 구급차·소방차 대기
 - ③ 3선(경계구역) - 감시조운영, 원거리기동순찰조, 원거리 불심사차단

❖ 대테러경비

1. 「테러취약시설안전화동규칙」
 - ① 테러취약시설지정 - ()
 - ② 다중이용건축물등 - A급(결정적), B급(중대한), C급(상당한)
 - ③ 테러취약시설 심의위원회 위원장 - 경비국장
 - ④ 경찰서장의 다중이용건축물 지도점검 - A급(() 1회 이상), B급-C급(() 1회 이상)
 - ⑤ 지방청장의 다중이용건축물 지도점검 - 반기 1회 이상
2. 테러방지법
 - ① 테러단체 - ()이 지정한 테러단체
 - ② () - 테러단체 조직원, 테러단체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③ () - 테러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
 - ④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 - ()
 - ⑤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
 - ⑥ ()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 수집()
 - ⑦ 국정원장은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 ⑧ 외국인테러전투원 출국금지 - ()
 - ⑨ 테러단체 구성죄 등 - 미수범과 예비음모 처벌, 세계주의
 - ⑩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 - () 이상 징역

3. 인질사건

- 리마중후군(인질범 → 인질), 스톡홀름중후군(인질 → 인질범)
- 영국 Scot Negotiation Institute에서 제시한 인질협상 8단계

 - ① 협상준비 → ② 논쟁개시 → ③ 신호 → ④ 제안 → ⑤ 타결안 제시 → ⑥ 흥정 → ⑦ 정리 → ⑧ 타결

❖ 통합방위법

- 통합방위사태유형
 - ① 갑종(대규모병력,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
 - ② 을종(일부 또는 여러지역, 지역군사령관)
 - ③ 병종(소규모병력,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합대사령관)
- 통합방위사태선포
 - ① 갑종 - 대통령(국방부장관의 건의)
 - ② 을종
 - ㉠ 원칙 : 지방청장, 지역군사령관, 합대사령관의 건의에 의해 시·도지사가 선포
 - ㉡ 둘 이상 시·도에 걸치는 을종사태 : ()의 건의에 의해 대통령이 선포
 - ③ 병종
 - ㉠ 원칙 : 지방청장, 지역군사령관, 합대사령관의 건의에 의해 시·도지사가 선포
 - ㉡ 둘 이상 사·도에 걸치는 병종사태 : () 또는 ()의 건의에 의해 대통령이 선포
- 중앙통합방위협의회 - ()소속, 의장 - ()
- 지역통합방위협의회 - 의장 :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통합방위본부 : 본부장-합동참모의장, 부분부장-합동작전본부장
- ()은 대피명령가능

❖ 경찰비상업무규칙

1. 비상근무종류

종류	연가, 가용경력	지휘관, 참모의 근무
갑호	연가중지, 100%	정착근무(현장이나 사무실)
을호	연가중지, 50%	정위치근무(관할구역)
병호	연가억제, 30%	정위치 또는 지휘선상위치
경계강화	별도 경력동원 없이 특정분야 근무강화	지휘선상위치(1시간)

작전준비태세 - '경계강화'단계 발령 이전에 별도 경력동원 없이 경찰 작전부대 출동태세 점검,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 연락망 구축 및 신속한 응소체제 유지

2. 필수요원(1시간), 일반요원(2시간)

3. 비상근무(경비, 작전, 정보(보안), 수사, 교통 - 2개 이상 관련은 경비비상으로 통합단일화)

4. 비상근무 발령권자 -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5. 경비비상

갑호	대규모 집단사태·테러·재난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하게 되었거나 그 징후가 현저
을호	대규모 집단사태·테러·재난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혼란하게 되었거나 그 징후가 예견
병호	집단사태·테러·재난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 혼란이 예견

6. 그 외 비상

작전비상	갑호	대규모 적정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징후가 현저한 경우
	을호	적정이 발생하였거나 일부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경우
	병호	정·첩보에 의해 적 침투에 대비한 고도의 경계강화가 필요한 경우
정보비상	갑호	간첩 또는 정보사범 색출을 위한 경계지역 내 검문검색 필요시
	을호	상기 상황에서 특정지역, 요지에 대한 검문검색 필요시
수사비상	갑호	사회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중대범죄 발생시
	을호	중요범죄 사건발생시
교통비상	갑호	농무, 풍수설해 및 화재로 극도의 교통혼란 및 사고발생시
	을호	상기 징후가 예상될 시

장정훈 마무리 특강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실무종합

2020.00.00 [토]

담당 : 장 정 훈 교수

cafe.daum.net/tntpolice

❖ 청원경찰

- ()와 () 감독받아 ()에 따른 직무수행
- 수사활동 X
- 청원주 → 지방청장 : 배치신청
- 지방청장 → 기관장 : 청원경찰 배치요청 가능
- 임용 - (), 임용승인 - ()
- 임용자격 - () 이상 사람(남녀불문)
- 국공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불가
- 징계종류 - 파, 해, 정, 감, 견
- 서장은 청원주에게 청원경찰 징계처분 하도록 요청
- 근무 중 제복착용의무
- 지방청장은 청원주 신청 받아 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대여가능
- ()는 항상 청원경찰 근무생활 감독, 근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해야 함
- 벌칙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 직권남용시 청원경찰법으로 처벌

제4장 교통경찰

❖ 「도로교통법」상 용어와 관련된 내용

- 왕복 4차선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되고, 외부차량 통제제한 없으며, 별도 주차 관리인 없는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 -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O / X)
- 대학교 내 도로 - 도로법상 도로 (O / X)
- 차 - ()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는 제외
-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범위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범위보다 (넓다 / 좁다)
-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기계라도 차에는 해당(O / X)
-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 주행을 하는 행위 - 운전(O / X)
- 어린이 - ()세 미만
- 모든 차가 대상 - 신호위반, 주차위반, 끼어들기 위반(운전중 휴대전화사용은 자동차등만 처벌)

❖ 무사고운전자 표시장 수여대상자

-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은 ()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 있는 사람으로 사업용자동차 운전이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여
- 운전경력별 표시장의 종류 및 운전경력
 - ① 교통안전장 - ()년 이상
 - ② 교통삼색장 - ()년 이상
 - ③ 교통질서장 - ()년 이상
 - ④ 교통발전장 - ()년 이상
 - ⑤ 교통성실장 - ()년 이상

❖ 안전표지

주의(위험), 규제, 지시, 보조(보충), 노면

❖ 어린이 보호구역

- 시장등은 관할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 중심으로 반경 ()이내 일정구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다만, 필요한 경우 ()이내 도로에 대해서도 지정 가능
-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지방청장·경찰서장의 조치
 - ① 자동차 통행 금지·제한
 - ② 자동차 정차·주차 금지
 - ③ 이면도로 일방통행으로 지정·운영하는 것
 - ④ 운행속도 매시 ()km 이내로 제한

❖ 교통지도단속

- 정비불량차의 점검
- 지방청장은 정비상태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 우려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 명할 수 있다. 필요하면

()일 범위에서 정비기간 정하여 차의 사용 정지 가능

- 무면허운전단속
 - ① 도로 아니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 X
 - ②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경합
 - ③ 무면허운전은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운전한 날마다 1개의 행위
- 약천후 시 감속운행
 - 폭우·폭설·안개 등 가시거리 100미터 이내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을 줄인 속도로 운행
- 점유자등이 없는 인공구조물의 조치
 - ① 서장이 공고한 날부터 () 지나도 해당 인공구조물 등 반환받을 점유자등 알 수 없거나 점유자등이 반환 요구하지 않으면 그 인공구조물 매각하여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 ② ①에 따른 매각대금은 공고한 날부터 () 지나도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점유자등이 반환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고에 귀속
- 도로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 훼손한 공사시행자는 공사 끝 날부터 ()일 이내 원상회복하고 결과를 경찰서장에게 신고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이나,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주차한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1시간 이내인 경우 과태료 - 8만원
- 고속도로 등 운전하는 운전자는 고장자동차 표지 항상 비치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차마는 건물이나 주차장에서 도로들어갈 때 일단정지한 후 안전 여부 확인하면서 서행

❖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 이상(만취 : ()% 이상))

1. 자동차등 음주운전처벌

-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년 이상 ()년 이하 징역이나 ()천 만원 이상 ()천 만원 이하 벌금
- 음주측정거부 - ()년 이상 ()년 이하의 징역이나 ()만원 이상 ()천 만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년 이상 ()년 이하 징역이나 ()만원 이상 ()천 만원 이하 벌금
- 0.03 이상 0.08 미만 - ()년 이하 징역이나 ()만원 이하 벌금
- * 자전거등 음주운전 -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벌칙금 3만원, 측정거부는 벌칙금 10만원)

2. 교통단속처리지침

- 음주측정시 입안 잔류알콜 행귀낼 수 있도록 음용수 ()ml 제공
- 음주측정 ()당 1개의 측정용 불대(Mouth Piece) 사용
- 호흡측정 없이 채혈 원하면 바로 채혈 가능
- 음주측정기(감지기 포함)는 정확공 유지 위해 연3회(감지기는 2회) 이상 검교정
- 명시적 의사 표시 않으면서 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했음에도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

3. 음주운전판례

1. 음주 운전 후 5시간 경과 - 측정불응죄 O
2. 호흡측정 거부자에게 혈액측정방법 고지의무 X
3. 음주감지기에 반응 O - 주취상태라고 단정 X
4. 호흡측정 후 운전자 요구에도불구 1시간 12분후 측정 - 위법 X
5. 히터 켜기 위해 시동, 실수로 차 움직임 - 음주운전 X
6. 입안 행굴 기회 요구무시하고 측정 - 0.05 - 주취상태라고 단정 X
7. 약물운전 -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 있는 상태
8.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 상상적 경합
9. 무면허운전은 특별한경우가 아닌 한 운전한 날마다 죄

장정훈 마무리 특강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실무종합

2020.00.00 [토]

담당 : 장 정 훈 교수

cafe.daum.net/tntpolice

4. 감경사유

- 운전이 가족 생계유지 중요한 수단,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 종사, 교통사고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사유없어야 감경
 -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 퍼센트 초과
 - ② 음주운전 중 () 피해 교통사고 야기
 - ③ 음주측정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 폭행
 - ④ 과거 ()년 이내 () 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
 - ⑤ 과거 ()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

❖ 우회전차로 아닌 직진 차로 따라 교차로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 - 교차로통행방법위반(O / X)

❖ 자전거등 운전자의 자전거등 통행방법

-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함
- 자전거도로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 안전표지로 통행 허용된 경우 제외하고는 2대 이상 나란히 차도 통행금지
- 횡단보도 이용 도로 횡단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 끌고 보행
-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 앞지르려면 앞차 우측으로 통행가능
- 밤에 도로 통행시 전조등과 미등 켜거나 야광띠 등 착용

❖ 어린이 통학버스

-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장치 작동 중일 때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 서행장소

- ① 교통정리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 ②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 ③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
- ④ 가파른 비탈길의 ()
- ⑤ 지방청장이 도로에서 위험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주차 및 정차금지, 주차금지

주차 및 정차금지	주차금지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 - 10m • ()m - 교차로가장자리나 도로모퉁이 • ()m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소방시설 설치된 곳 * 차 견인시 ()시간 경과되어도 인수 X → 등기우편으로 통지	• 터, 다 • ()m - 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 다중이용영업소

❖ 긴급자동차

1. 의의 -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혈액공급차량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인 자동차
2. 특례 -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시기와 금지장소, 끼어들기 금지
3. 긴급자동차(소방, 구급, 혈액공급, 경찰용)운전자가 긴급 운행 중 교통사고 야기시 정상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가능

❖ 운전면허

1. 효력발생 - 운전면허증 발급받은 때
2. 갱신 및 정기적성검사
 - ① 기간 - ()년(65세 이상 75세 미만 - ()년, 75세 이상 - ()년, 한 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 - ()년)
 - ②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 - 제2종 면허 받은 사람 중 갱신기간에 ()세 이상
 3. 교통안전교육 - ()시간

4. 종류

1종 대형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 ① 덤프트럭·아스팔트살포기·노상안정기 ②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③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④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보통	• 15인 이하 승합 • 12톤 미만 화물 • 건설기계(3톤 미만 지게차에 한함)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구난차 등은 제외)	
1종 특수	대형	• 견인형 특수자동차
	견인차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 견인차	• 총중량 3.5톤 이하 견인형 특수자동차
구난차	• 구난형 특수자동차	
2종 보통	• 10인 이하 승합 • 4톤 이하 화물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구난차 등은 제외)	

차종변경 없이 승차정원 25인승 자동차를 승차정원 12인 승으로 형식 변경하였을 경우 - 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가능

5. 운전면허발급제한

5년	• 무면허, 음주, 과로·질병·약물, 공동위험행위로 인피 사고 후 도주 • 음주운전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4년	• 5년 이외 인피 사고 야기 후 도주
3년	• 음주로 2회 이상 교통사고 • 자동차 이용범죄나 자동차 강·절도한 자가 무면허
2년	• 3회 이상 무면허, 2회 이상 음주, 2회 이상 공동위험행위 •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 야기 • 면허받을 수 없는 사람, 허위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받은 경우, 면허정지기간 중 면허받은 경우 • 자동차 강·절도 • 대리운시
1년	5년, 4년, 3년, 2년 이외
6개월	1년 제한되는 자가 원동기면허 받는 경우(공동위험행위는 원동기도 1년)
즉시	적성검사불합격, 미필

❖ 연습운전면허

1.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2. 면허 받은지 ()년 경과된 사람의 지도(혼자운전 - 무면허 X)
3. 주행연습 외 목적으로 운전 금지
4. 연습운전면허에 대한 준수사항위반 - 연습운전면허취소는 별도로 하고 무면허운전은 아님
5. 연습운전면허정지 (O / X).

❖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 ()이내(단, 면허 취소·정지 대상자는 ()이내)
경찰서장이 필요 인정하는 경우 1회 한하여 ()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국제운전면허

1. 외국발급(→ 국내운전)
 - ① ()부터 1년
 - ② 사업용 운전금지(단, 대여용 제외)
 - ③ 입국은 적법한 입국이어야 함

장정훈 마무리 특강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실무종합

2020.00.00 [토]

담당 : 장 정 훈 교수

cafe.daum.net/tntpolice

❖ 운전면허행정처분

* 운전면허증 반납사유 발생하면 ()일 이내 면허증 반납

1. 면허취소사유

- ①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빼앗아 이를 운전한 경우
 - ② 과거 1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재차 음주운전한 경우
 - ③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때
 - ④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빼앗아 이를 운전한 경우
 - ⑤ 과거 동일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 * 과거 동일 전력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 벌점 100점

2. 법규위반시 기준

• 속도위반(60km/h 초과)	()점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점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점
• 승객의 차내소란행위 방치운전	()점
•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	()점
•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점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점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점

2. 교통사고야기시 벌점

- 사망교통사고시 벌점 ()점
- 중상교통사고시 벌점 ()점
- 운전자 본인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 산정 X

3. 교통사고야기시 조치불이행

- 인적 피해가 있는 도주사고 - 면허취소
- 인적 피해가 있는 도주사고 시 자수 - 행정처분 감경
- 물적 피해가 있는 도주사고 - 벌점은 15점(자수시 벌점감경 X)

4. 자동차이용 범죄행위시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면 처분 집행일수의 ()로 감경

❖ 통고처분

- 범칙행위로 교통사고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 받아 범칙금 납부하였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 - 이중처벌(O / X)
- 다음에 해당하면 통고처분 못하고 **결격심판 청구**()
- ① 성명 또는 주소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 속도위반시 범칙금, 과태료, 벌점부과(승용차 기준)

속도	범칙금	과태료	일반도로벌점
60km/h 초과	()만원	()만원	()점
40km/h 초과 60km/h 이하	()만원	()만원	()점
20km/h 초과 40km/h 이하	()만원	()만원	()점
20km/h 이내	()만원	()만원	()점

❖ 교통사고

1. 교특법 목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신속한 회복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2. 토마토상자 사건 - 교통사고 X
2. 교특법이나 특가법은 도로 아닌 곳 사고도 포함
3. 교통사고시 조치의무 및 신고의무 - 귀책사유 없는 운전자도 의무 O

4. 교통사고조사규칙

- 현장도면작성 - 교통사고 발생지점과 사고차량 정차지점 표시할 때는 사고발생 지점을 도면의 중앙에 배치하고, 기해차량의 진행방향에 위로 향하도록 하여 이동지점을 ()으로 표시하고, 정차지점은 ()으로 표시
- 당사자 순위 결정
 - ① 차대차 사고로 당사자 간 과실차이가 있는 경우 - ()
 - ② 차대차 사고로 당사자 간 과실 동일한 경우 - ()
 - ③ 차대사람 사고 - ()

5. 교통 사고현장 측정

- ① 사상자 위치는 허리 중심으로 ()점 측정
- ② 고정물체와 사소한 충돌흔적, 가로수 등에 생긴 자국은 ()점 측정
- ③ 직선으로 나타난 긴 타이어 자국은 ()점 측정
- ④ 길게 비벼지거나 파손된 가드레일은 ()점 측정
- ⑤ 직선으로 길게 나타나다 마지막 부분 휘어지거나 변형있는 타이어 자국은 ()점 측정

6. 치상사고처리(합의해도 처벌되는 12개항)

- ① 신호, 지시위반(보행자신호 위반은 신호위반 X)
- ② 중앙선침범, 고속도로등에서 횡단유턴후진 (일반도로 후진사고는 합의하면 처벌 X)
- ③ 제한속도 ()km/h 초과
- ④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끼어들기 금지,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 ⑤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
- ⑥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⑦ 무면허운전
 - * 원동기면허 정지 상태에서 원동기 운전 - 무면허운전 O
- ⑧ 음주, 약물운전
- ⑨ 보도침범
- ⑩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위반
- ⑫ 적재화물추락사고

7. 교통관련문제

- 신호·지시위반사고
 - ① 교차로에서 적색등화 켜진 상태에서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와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 **신호위반 X**
 - ②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에 따라 차량 보도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지나 우회전하다가 사람 다치게 한 경우 - **신호위반 O**
 - ③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황색 등화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신호위반 O**
 - ④ 회전교차로에서 표시된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진행하는 것은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 O
 - ⑤ 교차로 진입 직전 백색실선 설치되어 있으나 진로변경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없는 경우 교차로에서 진로변경 하다가 야기한 교통사고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 X
- 중앙선침범사고
 - ① 불가항력, 부득이한 사유로 침범 - 중앙선 침범사고 X
 - ② 횡단보도 표시 위하여 부득이 중앙선인 황색실선 설치하지 못하였더라도 중앙선 연장으로 보아 **중앙선침범으로 처리**
 - ③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한 버스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 넘어가는 행위 - **중앙선침범에 해당 O**
 - ④ 좌회전,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점선으로 표시된 경우에 좌회전, 유턴을 하다 야기한 사고 - **중앙선침범에 해당 X**
-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사고
 - ①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점멸 이후 횡단시작 했어도 녹색등 점멸 중이라도 **보행자 O**
 - ②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하여 보행자 아닌 제3자 다치게 한 경우 - 인과관계 인정되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O**
 - ③ 보행신호등이 녹색점멸 중 횡단 시작하여 횡단 완료 전에 적색 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던 운전자가 야기한 사고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사고 (O / X)**
- 뺑소니사고
 - ① 특가법은 도로에서 사고에 한정 (O / X)

장정훈 마무리 특강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실무종합

2020.00.00 [토]

담당 : 장 정 훈 교수

cafe.daum.net/tntpolice

- ② 피해자가 2주간 치료 요하는 경미한 상해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구호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③ 피해자 병원에 후송 후 신원 밝히지 않고 도주 - 특가법상 도주 O
- ④ 목격자판례 - 도주 O
- ⑤ 동승자를 운전자라고 허위신고 후 사고장소 이탈하지 않고 보험 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은 후 이를 후 경찰에 출두하여 자수한 경우 - 특가법상 도주 (O / X)
- ⑥ 만취 운전자가 사고 직후 취중상태에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수십미터 걸어가다 붙잡혀온 경우 - 특가법상 도주 (O / X)
- ⑦ 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한 동승자 - 뺑소니공동정범 X
- ⑧ 교회주차장에서 사고 후 도주 - 도주 O
- ⑨ 사고 후 운전자가 구호조치 필요성 인정하여 부근의 택시기사에게 이송 요청하고 경찰이 오면 병원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의 거부로 병원으로 이송되지 아니한 사이에 피해자의 동승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ex-명함)를 제공하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 특가법상 도주 (O / X)

❖ 위험운전치사상죄

- 음주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 운전하여 사람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음주에는 측정거부 포함
- 음주인피사고 후 도주하면 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과 「도교법」 제44조(음주운전)만 적용하고 위험운전치사상죄(특가법 제5조의11)는 적용되지 않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특가법 5조의13)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다음 죄를 범한 경우는 다음에 따라 가중처벌
- ① 어린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② 어린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뢰의 원칙

- ① 고속도로에서 보행자 나타날 것 예견할 주의의무 X (단,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했다면 주의의무 O)
- ② 반대차로에서 중앙선 넘어갈 것 예견할 주의의무 X
- ③ 편도 5차로 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진행까지 예상할 주의의무 X
- ④ 중앙선 부근 서있던 보행자가 마주 오던 차에 충격당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 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역과시킨 경우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⑤ 빗물로 노면 미끄러우면 후방 진행 차량은 속도 줄이고 안전거리 확보 할 주의의무가 있다.
- ⑥ 부모는 11세 어린이 조수석에 남겨두고 내릴 때 열쇠 빼는 등 주의의무 O
- ⑦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경우 반대 차선상 정지하여 있는 차량 뒤로 보행자가 건너올 것까지 예견할 주의의무 X
- ⑧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앞차가 진로양보해도 앞지르기 못함
- ⑨ 공사관계로 3m 정도 협소한 도로 진행하는 차는 후방차량이 추월 하리라 예견하여 후방주시할 의무 없다.
- ⑩ 야간에 편도 2차로 좁은 도로상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하여 정상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주차금지장소가 아니어도 주차해 놓은 화물차 운전자는 무죄라고 할 수 없다.

❖ 정지거리

- 정지거리 = 공주거리 + 제동거리
- () = 실제 제동페달 밟아 제동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주행한 거리
- () = 제동효과 발생한 때부터 정지할 때까지 주행한 거리

❖ 착한운전마일리지

- 1년간 무위반·무사고 서약 실천
- 1년 기준으로 10점 특혜점수 부여
- 부여된 10점의 특혜점수는 기간 관계없이 운전자가 정지처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제5장 정보경찰

❖ 경찰청 정보국장의 분장 사항

- ①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 ② 정치·경제·노동·사 회·학원·종교·문화 등 제 분야에 관한 치안 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 ③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 ④ 집회·시위 등 집단사 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 ⑤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등
- 정보공개업무,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경무인사기획관

❖ 정보의 질적요건

	사용자의 사용목적과 관련
	사실과 일치
	()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기에 제공
	주제와 관련된 모든 사항 포함
객관성	정보가 국익증대와 안보추구라는 차원에서 객관적 입장 유지

❖ 정보의 효용

()효용	최고정책결정자에 대한 정보보고서는 가능한 중요 내용만을 요약하여 한쪽을 보고
()효용	정보는 정보사용자가 필요 하는 시점에 제공
()효용	정보는 정보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경찰청 정보기록실 운영, 정보의 분류·기록·관리).
()효용	정보는 국력
()효용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

❖ 정보의 분류

- ① () - 전략, 기술정보
- ② () - 기본, 현용, 판단정보
- ③ () - 적극, 보안(소극)정보
- ④ () -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과학 등
- ⑤ () - 인간정보(HUMINT), 기술정보(TECHINT)
- ⑥ () : 근본 - 부차적, 정기 - 우연, 비밀 - 공개

❖ 정보순환

1. 정보요구단계(기본요소 - 계획서 - 명령 - 조정·감독)

	• 전 정보기관활동의 기본방침
	• 경찰청에서 정보활동계획 수립 시 가장 중요한 지침
	• 계속적·반복적·전국적, 첩보수집계획서 필요
	• 정보관들은 일상적으로 이에 따라 일상적 정보활동 수행
	• 임시적·단편적·지역적, 특수사건
	• 실용적이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정보사용자들은 주로 이를 적극 활용
	• 정책수정

2. 첩보수집단계 -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단계

첩보출처 개척 → 첩보수집 → 첩보 전달

3. 정보분석 및 생산단계

① 선택 → 기록 → () → () → () → ()

장정훈 마무리 특강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실무종합

2020.00.00 [토]

담당 : 장 정 훈 교수

cafe.daum.net/tntpolice

② 개념적 분류

	공개출처로부터 수집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최소한 실제 확실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보
비밀(secret)	정보를 소유한 주체가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경우
	의도적으로 정보분석가를 대상으로 은폐, 기망 또는 오도하기 위한 정보
	정보의 분석이나 비밀의 수집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는 현안

③ 정보 분석방법

자료 위주 분석방법	자료 위주의 분석방법은 분석보다는 수집에 우선순위를 두는 형태	
개념 위주의 분석방법	상황논리	분석대상 되는 현안 중심으로 상황이 논리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결론 도출
	이론 적용	현안과 관련된 보편적 이론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이론에서 제시하는 결론에 충실한 전망 내놓는 방법
	역사적 상황과 비교	가장 간편하고 용이하며 분석시간 줄일 수 있는 방법

4. 정보배포단계

① 정보배포원칙

	정보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간에 맞추어 배포
	작성된 정보연구 및 판단이 누설됨으로써 초래될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대책 강구
	정보가 필요한 기관에 배포되었다면 그 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는 그 기관에 계속 배포

② 정보배포의 수단

	고위층 또는 다수인원에 대하여 정보담당관이 정보내용을 요약하여 구두로 설명 - 현용정보 배포수단으로 많이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간행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 못한 긴급한 정보, 즉 현용정보 전달에 주로 사용되며 신속성 중요시 분석된 내용에 대한 요약이나 결론만 언급하기 때문에 정확성은 다른 수단에 비하여 낮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일 24시간에 걸친 제반 정세 변화를 중점적으로 망라한 보고서 사전에 고안된 양식에 의해 매일 작성되며 제한된 범위에서 배포
	누적된 정보가 다수 사람이나 기관이 이해관계 또는 가치를 가지는 것일 때 발행

* 정보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류 - 정책정보보고서, 정보상황보고서(속보), 정보판단(대책)서 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 - 거의 확실시 ② () - 비교적 확실 ③ () - 장기적인 예측 ④ () - 막연히 추측 ⑤ () - 최소한의 대비

* 신원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에 대한 (), (), () 측정 () 이 직권, 관계기관장 요청에 따라 행함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무원임용예정자 ② 비밀취급인가예정자 ③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 수행하는 소속 직원 포함) ④ 임명할 때 정부 승인이나 동의 필요한 공공기관 임원(직원 X) ⑤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국정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에 해 끼칠 정보가 있음 확인된 사람에게 대해서는 관계기관장에게 통보()
→ 통보받은 관계기관장은 보안대책 마련()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 용어

- ① **집회** -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사람의 다과에는 제한이 있을 수 없다.
* 2인이 모인 집회도 집시법상 규제 대상 (O / X)
* 공동목적 없이 우연히 만나는 것, 일시적 회합을 위해 대기하는 모임 - 집회 (O / X)
- ② **시위** - 여러 사람이 공동 목적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 가하는 행위
* 순수한 1인 시위 - 집시법상 집회·시위(O / X)
- ③ **주최자** - 자기 이름, 책임 아래 집회·시위여는 사람·단체. 주최자는 주관자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 실행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가능

- ④ **질서유지인** - 주최자가 자신 보좌하여 집회·시위 질서유지목적으로 임명한 () 세 이상의 사람(자신 보좌하도록 18세 이상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
- ⑤ **경찰관서** - 국가경찰관서

2. 신고절차

- (1) 신고
 - ① 옥외집회·시위 시작 ()시간 전부터 ()시간 전에 신고서 제출 (원칙 - 서장, 둘이상 경찰서 - 지방청장, 둘 이상 지방청 - 주최자 관할 지방경찰청장)
 - ② 접수증 () 내출
 - ③ 신고한 집회 미개최시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시간 전에 철회
 - (2) 보완통고 - ()시간 이내 ()시간 기한으로 보완통고가능
 - (3) 금지통고 - ()시간 이내(예외인정)
 - (4) 이의신청 - () 이내 직근상급관서장에게
 - (5) 재결 - ()시간 이내()시간 이내 재결 X → 금지통고상설 → 신고한대로 집회개최가능(시기 놓친 경우는 별도 일시 정해 ()시간 전에 신고하고 개최))
 - (6) 중복신고 집회·시위
 - ① 중복 신고 시 분할개최권유 등 노력해야 함
→ 권유안받아들이면 **후신고 집회 금지가능**
 - ② 선신고 집회 때문에 금지되는 후신고 있는 경우 선신고 주최자는 집회시작 ()시간 전에 개최사실 통지
 - (7) 거주자 관리자가 시설·장소 보호요청하면 금지 가능한 집회
 - ①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상가밀집지역 X)
 - ② 초·중·고등학교
 - ③ 군사시설 주변지역
 - (8) 금지장소 - 100m이내 ()집회·시위 금지
 - ① 국회의사당(예외 - 국회활동 방해우려 X, 대규모 확산우려 X)
 - ② 각급법원, 헌재(예외 - 법관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 재판에 영향 미칠우려 X, 대규모 확산우려 X)
 - ③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재소장 공관
 - ④ 국무총리공관(예외 - 국무총리 대상 X, 대규모 확산 우려 X)
 - ⑤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 숙소(예외 - 외교기관·외교사절 숙소대상 X, 대규모로 확산우려 X, 휴일)
 - (9) 교통소통 - 질서유지인 두고 도로 행진 시 금지 X
(단, 교통소통에 장애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 줄 우려 있으면 금지가능)
 - (10) 질서유지선
 - ① 신고받은 관서장은 최소한 범위에서 질서유지선 설정가능
 - ② 질서유지선 설정시 () 또는 ()에게 고지
 - ③ 질서유지선 훼손 - () 이하 징역 또는 () 이하 벌금·구류·과료

장정훈 마무리 특강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실무종합

2020.00.00 [토]

담당 : 장 정 훈 교수

cafe.daum.net/tntpolice

(11) 확성기소음기준

구분 (단위 : Leq dBA)	대상 지역	시간대			
		주간	야간	심야	
대상 소음도	등가소음도 (Leq)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5 이하	65 이하	
최고소음도 (Lmax)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85 이하	80 이하	75 이하	
		공공도서관	85 이하	80 이하	
		그 밖의 지역	95 이하		

- ① 등가소음도는 10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 ② 최고소음도는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에 대해 매 측정 시 발생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측정하며, 동일한 집회·시위에서 측정된 최고소음도가 1시간 내에 ()회 이상 위 표의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12) 집회 장소에 경찰관 출입

경찰은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정복입고 출입가능, 옥외집회는 긴급성이 있는 경우만

(13) 평화적 집회 보호

- ① 평화적 집회 방해받을 우려 있으면 경찰관서에 보호요청
→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X
- ② 평화적 집회방해하면 처벌() () ()은 가중처벌)

(14) 특정한 참가배제

주최자·질서유지인은 특정 사람·단체 참가배제가능(다만, 기자는 출입보장)

- ① 후신고 집회가 금지통고 되고 선신고하여 옥외집회·시위 개최 가능한 주최자가 신고한 집회·시위 개최하지 않는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안하면 () 부과

(16) 해산절차

해산 주제 : 관할경찰서장 또는 권한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

- ① 종결선언요청 - 주최자에게 요청하되, 소재 알 수 없으면 주관자·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 통하여 요청가능
- ② 자진해산요청 - 종결선언요청 따르지 않으면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해산 요청
* 반드시 자진해산 용어 사용할 필요 없음
- ③ 해산명령 및 직접 해산 - 자진해산요청 따르지 않으면 () 이상 자진해산명령, 해산명령에 불구하고 해산 않으면 직접 해산

제6장 보안경찰

❖ 공산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주의 철학이론 - 유물론, 유물사관, 변증법적 유물론 등 • 공산주의 경제이론 - 노동가치설, 잉여가치설, 자본축적론, 궁핍화이론, 제국주의론, 자본주의 붕괴론(자본축적 - 자본집중 - 빈곤증대) • 공산주의 정치이론 - 폭력혁명론(자본주의 고도로 발달된 국가에서 발생), 프롤레타리아독재론(무산계급이 유산계급 타도하고 국가권력 장악하면 유산계급 잔재를 청산하는데 일정한 과도기가 필요), 계급투쟁론, 국가사멸론 • 마르크스 역사발전 5단계 ()사회 → ()사회 → ()사회 → ()사회()사회()사회 • 자본주의 붕괴론 자본() → 자본() → ()의 과정 거쳐 붕괴

❖ 북한의 대남전략전술과 국내 안보위해세력

1. 북한의 대남공작부서 - 노동당 산하 통일전선부, 군이 관할하는 정찰총국과 보위국, 국무위원회 산하 국가보위성

2. 전략의 기본원칙

- ① 혁명과정에 필요한 것이라면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전술 간 상호모순이 있어도 상관없음
- ② 상호 상반되거나 배타적인 두 개 이상의 전술을 동시에 구사
- ③ 기존 전술이 당장 쓰이지 않더라도 정세가 바뀌면 옛 전술의 활용가치가 다시 생길 수도 있으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 ④ 공산화 운동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후퇴하고 적에게 양보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일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3. 통일전선전술 - 공산주의 세력이 약한 경우 비공산 세력과도 연합하는 전술로서 북한이 남북한교류 협력 과정에서 이용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이는 전술

4. NL주사파

- ① 남한사회에 대해 미국의 간접통치를 받는 신식민지이며, 미국의 하청 경제체제로서 정상적인 자본주의에 진입하지 못한 '췌자본주의 체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통일전략 : 1단계로 미국 축출하고 현정권 타도후, 2단계로 북한과 고려연방제에 의해 통일을 완수
- ③ 혁명의 과제 -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
5. 좌익폭력세력의 기본적 투쟁과정 : 의 - 조 - 투

❖ 방첩활동

1. 방첩의 기본원칙 : 완, 치, 계속(탐 - 판 - 주 - 이 - 검)
2. 수단 - 적극적, 소극적(정보·자재보안 및 인원·시설보안 확립, 보안업무 규정화, 입법사항 건의), 기만적 수단(허위정보 유포, 양동간계시위, 유언비어 유포)
3. 방첩활동의 대상

(1) 간첩

1) 간첩의 분류

- 임무에 의한 분류 - 일반, 보급, 증원, 무장
 - 활동방법에 의한 분류 - 고정, 배회, 공행(합법적 신분)
 - 손자에 의한 분류
- ① () - 적국의 시민을 이용
 - ② () - 적의 관리를 매수
 - ③ () - 적의 간첩 역으로 이용
 - ④ () - 배반 염려 있는 아군 간첩에 조작된 사실 전달
 - ⑤ () - 적국 잡일 후 돌아와 보고, 현대국가 대부분이 운용

2) 간첩망

단일형	• 개별적 연락 X • 보안유지 O, 신속 O, 활동범위 좁고, 성과 낮음
삼각형	• 횡적연락차단, 보안유지O, 일망타진가능성 적음
서클형	• 합법적 신분 • 활동 자유롭고 대중적 조직과 동원가능 • 간첩정체 폭로 시 외교문제 야기
피라미드형	• 간첩 - 주공작원 - 행동공작원 • 활동범위 넓음, 행동 노출 쉽고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 소요
레포형	()의 변형

* () - 간첩이 지령이나 보고내용을 은닉·보호하기 위하여 아라비아 숫자로 상호 약정한 암호 문건

* () - 북한이 남파간첩에게 지령 하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송

(2) 태업 - 대상은 일단 파괴되면 수리하거나 대체 어려울 것

(3) 전복 - 국가전복(피지배자가 지배자), 정부전복(지배계급내)

❖ 비밀공작

- 공작의 4대요소 - 주관자, 공작목표, 공작금, 공작원(주, 행동, 지원)
- 비밀공작의 과정
() → () → 모집·훈련 → 브리핑 → 파견·귀환 → 디브리핑 → 보고서작성 → 보고

장정훈 마무리 특강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실무종합

2020.00.00 [토]

담당 : 장 정 훈 교수

cafe.daum.net/tntpolice

• 공작활동

- ① 가장 : 정보활동에 관계되는 모든 요소의 정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꾸며지는 외적·내적 형태
- ② () : 비밀공작 수행함에 있어서 상·하급 인원이나 기관 간에 비밀을 은폐하려고 기도하는 방법
- ③ () : 비밀공작활동에 있어서 조직원 상호 간에 어떤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전에 약정해 놓은 표시
- ④ 관찰요사 : ()이란 일정한 목적 하에 사물 현상 및 사건의 전말 감지하는 과정. ()란 관찰한 경험을 재생하여 표현·기술하는 것
- ⑤ () : 장차 공작활동을 위하여 공작목표나 공작지역에 대하여 예비지식 수집 위한 사전조사활동
- ⑥ 감시 : 시각이나 청각 등을 사용하여 관찰하는 기술

• 심리전

- 심리전의 종류
 - ① 운용에 따른 구분 - 전략심리전(광범위, 장기적), 전술심리전(단기적)
 - ② 목적에 따른 구분 - 선무심리전, 공격적 심리전, 방어적 심리전
 - ③ 주체에 따른 구분 - 공연성 심리전, 비공연성 심리전
- 선전의 유형
 - ① ()선전 - 출처 밝힘
 - ② ()선전 - 출처 위장
 - ③ ()선전 - 출처 밝히지 않음

• 국가보안법

1. 특징

- 고의만 처벌. 기본적으로 미수·예비·음모처벌
- 예비·음모 처벌 - ()
- 유기징역 선고 시 장기 이하 자격정지 병과()
- 모든 국민 범죄 고지의무 (O / X)
- 죄를 범한 후 자수, 타인고발, 타인이 국가보안법 범하는 것 방해 - ()
- 참고인 () 이상 소환 불응시 영장 받아 구인가능
- 구속기간연장(경찰 - 20일(1차), 검사 - 30일(2차))
- 공소보류기간 - (), 공소보류 취소시 재구속()
- 죄 범하고 보수 받으면 () 몰수, 소추안해도 압수물 폐기, 국고귀속 가능
- 불고지 대상범죄 - ()
- 미수처벌 X - ()
- 본범과 친족 관계시 감면 - ()

2. 주체제한 있는 범죄

- () - 반국가단체 구성원, 지령 받은 자(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지령을 받은 자 포함)만
- () - 반국가단체 구성원, 지령 받은 자는 제외

3. 반국가단체 구성·가입·가입권유

- 반국가단체 - 정부참칭·국가변란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 갖춘 단체
- 정부참칭 - 정부와 동일명칭 사용 X, 정부로 오인할 정도면 충분
- 국가변란 - 자연인 사임·교체만으로는 부족, 정부조직·제도 자체 파괴 (국가변란 < 국헌문란)

4. 금품수수 - 금품에 반드시 환금성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단순잠입탈출 -
6. 이적단체 구성가입 - 이적단체 구성의 시기는 통솔체제 갖춘 결합체 결성한 시기. 지위와 역할에 따라 법정형 차이 없음
7. 회합·통신 - 단순한 신년인사나 안부편지는 죄 X
8. 편의제공 - 3조~8조의 죄 저지를 자에게 편의제공시 성립
9. 불고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 이하 벌금. 친족관계시 필요적 감면
10. 상금 -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 지급() .

• 보안관찰

1. 대상자 - 보안관찰해당범죄. ()이상. ()이상. 형의 전부나 일부 집행
2. 보안관찰 해당범죄 X
 - ① 형법 - 내, 일, 전
 - ② 군형법 - 단
 - ③ 국가보안법 - 반, 찬, 회, 불, 특, 무, 기
3. 청구 - ()가 청구서를 ()에게 제출
4. 보안관찰처분 관련 사안 - 보안관찰 처분청구, 취소청구, 기간갱신 청구, 면제결정청구, 면제결정취소청구, 면제결정신청
5.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 후 용의자에 대하여 다른 보안관찰해당 범죄경력 발견한 때는 즉시 사안을 담당하는 검사(주임검사)에게 보고. 사안 송치 후 조사 계속하고자 할 때는 미리 주임검사 지휘 받음
6. 면제(할 수 없다) - 준법정신, 주거와 생업, 신원보증(()인 이상)
7. 결정 - 보안관찰심의위원회 의결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함
8.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 ① 위원장() 1인 과 ()의 위원
 - ② 위원 :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③ 재과출과
9. 기간 - 2년(갱신기간도 2년, 갱신횟수는 제한 없음)
10. 관찰 ()은 피보안관찰자의 동태를 관찰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선도 하고 재범을 예방하여야 한다.
11. 집행중지
 - ① 사유 - 도주, ()이상 소재불명
 - ② 절차 - 경찰서장의 신청 → ()가 결정 →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 ③ 취소 - 집행중지사유 소멸하면 () 취소
12. 신고(서장에게)
 - ① 대상자신고 - 교도소내 신고(출소 2개월전까지 교도소장 통해 거주예정지 경찰서장에게 신고), 출소신고(7일), 변동사항 신고(7일)
 - ② 피보안관찰자 신고
 - 처분신고(()일), 정기신고(3월), 변동사항신고(()일), 주거지이전·국외여행-()일 이상 주거이탈여행신고
13. 불복 - ()일 이내 ()에 행정소송 제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목적 행위는 이 법률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법 적용
- 남한주민 북한방문시 - 통일부장관의 승인(7일전까지 방문승인신청), 미승인 북한방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 받은 경우 - 승인 필수적 취소
-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방문 -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신고
- 북한주민 접촉 신고 : 접촉 7일 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신고서 제출. 유효기간은 3년 이내. 3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 신고한 목적 범위 내에서는 유효기간 중에 횡수에 제한없이 접촉 가능하다.
- 물품등 반출·반입 - 통일부장관의 승인(반출·반입 7일전까지 신청)
- 북한으로의 물품 반출·반입시 법적 절차
- 북한주민 접촉신고 - 거래를 위한 접촉 및 협의 - 계약체결 및 승인 대상 여부 확인 - 반출·반입 승인신청 - 관련 서류 구비 및 통관 - 교역 보고
- 국가보안법과의 법리문제
 - ① 이 법은 항상 국가보안법보다 우선 적용 (O / X)
 - ②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 소지하고 북한 왕래시 언제나 국가보안법 적용 배제 (O / X)
 - ③ 증명서 발급 않고 남북 왕래하거나, 재외국민이 신고하지 않고 북한 왕래한 경우 신고없이 회합하면 국가보안법 적용 배제 (O / X)
 - ④ 북한주민 접촉 승인 받고 북한 방문하여 그 기회에 이루어진 반국가단체구성원과의 만남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O / X)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정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 벗어난 후 외국 국적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보호 및 지원 받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

장정훈 마무리 특강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실무종합

2020.00.00 [토]

담당 : 장 정 훈 교수

cafe.daum.net/tntpolice

2.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기준

다음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 안 할 수 있음.

- ①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 ②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 ③ 위장탈출 혐의자
- ④ 체류국에서 () 이상 생활근거지 두고 있는 자
- ⑤ 국내 입국 후 () 경과 후 보호신청한 자
- ⑥ 그 밖에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등급

가급	신변위해를 당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사람
나급	신변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자, 적응 못하고 불안정해 관찰·계도가 필요한 사람
다급	신변위해를 당할 우려는 희박하나 초기 사회정착을 위해서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사람
종료자	거주지 편입 시 연소자(15세 이하), 연장자(65세 이상), 중증질환자 등 신변위해를 당할 우려가 극히 희박한 자

제7장 외사경찰활동

❖ 국제질서 변천순서

이상주의(최대다수 최대행복, 18세기) → 자유방임주의(보이지 않는 손, 19세기) → 제국주의(19세기 말) → 이데올로기적 패권주의(2차대전 이후) → 경제패권주의(1980년 이후)

❖ 다자간 협상의 종류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의한 사회적 덤핑 규제
	개도국 기술경쟁력 확보 저지 위한 선진국의 연대음모. 주로 지적재산권보호에 중점
	엄격한 환경기준 가진 선진국들이 자국의 통상 관련입법 통하여 생태적 덤핑 규제하는 것
	개방과 내국인 대우를 통한 경제조건의 평균화 추진

❖ 통역

동시통역	통역부스(booth)에서 헤드폰을 끼고 연사의 발언을 들으면서 동시에 다른 언어로 통역하는 것
순차통역	연사의 발언을 청취하면서 노트테이킹(note-taking)하다가 발언이 끝나면 통역하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인 통역방법
릴레이통역	3개국어 이상으로 진행되는 국제회의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동시통역의 한 방법
위스퍼링	동시통역이 필요한 상황에서 통역장비 없이 한 두 명의 귀빈 뒤쪽이나 옆에서 소곤소곤 속삭이듯이 동시통역을 하는 것
생동시통역	동시통역의 형태이나, 별도의 동시통역부스나 장비 없이 생으로 동시통역을 하는 것
방송통역	TV화면과 함께 음성을 동시통역하는 것
화상회의통역	원격지에 있는 사람들과 화상회의를 할 때 사용되는 통역을 말하며, 고도의 기술과 장비가 필요

❖ 귀화 - 법무부장관의 허가

1. 일반귀화 - () 이상, 성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단정 요건구비,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 등
2. 국적취득 후 () 이내 외국국적 포기

❖ 외국인의 권리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경과한 19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인정(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은 인정 X)

❖ 외국인등록의무

1. ()일 초과 체류시 입국한 날부터 ()일 이내 등록
2. 등록제외대상
 - ① 주한 외국공관, 국제기구직원 및 가족
 - ② 협정에 따라 유사한 특권·면제 누리는 사람과 가족
 - ③ 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여권

1. 발급권자 - ()장관(영사나 지자체장에게 대행)
2. 관용여권발급대상 -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재외동포 교육위한 교사와 배우자 및 ()세 미만 미혼자녀
3. 여권발급거부 - 장기 ()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4. 발급된 날부터 ()개월 내 여권 받아가지 않으면 여권 효력 상실
5. 여권대신 증명서 - UN여권, 여행증명서
6. 여행증명서(유효기간 1년)
 - ① 출국하는 무국적자
 - ② 해외입양자
 - ③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경찰기관 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

- 정의
 - ① 공무국외출장 -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및 파견
 - ② 주관부서장 -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관리·감독자
- 재외공관의 협조 요청 - ()은 최소 () 전에 외사국 경유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문서로 요청
- 선물수령 신고 - 미화 ()달러 또는 ()만원 가액 상당 이상 선물 받은 때는 귀국 후 지체 없이 소속기관 감사부서에 신고

❖ 외국인의 입출국

- 외국인의 입국
 - ① 영미의 학설 - 외국인 입국문제는 본질적으로 국내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금지가능
 - ② 대륙의 학설 - 외국인 입국문제는 국가의 교통권이라는 기본적인 권리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불가
 - ③ 통상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체결되어 있는 국민과 같이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
- 외국인의 출국
- 외국인의 강제출국은 형벌이 아닌 행정행위

❖ 지문 및 얼굴 정보 제공

-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 면제
 - ① ()세 미만인 사람
 - ②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업무 수행 위해 입국하는 사람과 그 동반 가족
 - ③ 외국과 우호 및 문화교류 증진, 경제활동 촉진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 고려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정보 제공 않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외국인 입국금지

- 입국금지자는 즉시퇴거 원칙
- 입국금지 처분 - 행정처분 (O / X)
- 입국금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없음
- 입국금지로 인한 손해발생 비용 - () 부담

❖ 여행정보

여행정보단계	해외체류자	해외여행 예정자
1. ()경보(여행유의)	신변안전 위험 요인 속지·대비	
2. ()경보(여행자제)	신변안전 특별유의	불필요한 여행 자제
3. ()경보(철수권고)	긴급응무 아니면 철수	여행취소·연기
4. ()경보(여행금지)	즉시 대피·철수	여행금지 준수

장정훈 마무리 특강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실무종합

2020.00.00 [토]

담당 : 장 정 훈 교수

cafe.daum.net/tntpolice

*** 특별여행주의보**

- ①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협이 있는 국가(지역)에 대하여 발령
- ②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 사증**

1. 발급권자 - () (재외공관장에게 위임가능)
2. 무사증입국 - 재입국허가, 사증면제협정,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는 자, 난민여행증명서
3. 종류 - 공무(), 유학(), 회화지도(), 예술·홍행(), 계절근로(), 비전문취업(), 결혼이민() 등
4. 관광통과(B - 2)의 체류자격 가진 자는 ()일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부여받아 사증 없이 입국가능
5.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부터 ()개월

*** 체류자격**

- 대한민국에서 출생 체류자격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인 출생한 날부터 ()일 이내,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국적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 이내에 체류자격 받아야 한다.
-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하려면 미리 ()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받아야 한다.

*** 상륙의 종류**

1. 승무원상륙 - ()일
2. 관광상륙 - ()일
3. 긴급상륙 - 질병 등 사고 - ()일
4. 재난상륙 - 조난 - ()일
5. 난민임시상륙 - ()의 승인(()은 ()과 협의) - ()일

*** 출국금지**

- 수사 위하여 출국이 부적당
- ① 원칙 - ()개월
- ② 기소중지, 수사진행 곤란 - ()개월
- ③ 영장발부 - 영장유효기간
- 형사재판 계속 - ()개월
- 징역·금고형 집행 - ()개월
- 벌금·추징금 미납 - ()개월
- 세금체납 - ()개월
- 대한민국의 이익 - ()개월

- * 여권휴대·제시의무()세 미만은 예외) 위반 - ()
- * 강제퇴거 대상 - ()이상 형 선고받고 석방된 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 () 소속
-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년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가능
- 취업활동 기간 만료되어 출국 전 재고용 허가 요청한 근로자는 1회에 한하여 ()년 미만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취업 후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년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취업 불가
- *취업활동할 수 있는 체류자격 가지지 아니한 사람 고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외사경찰활동**

- ()활동
- 반국가적 행위의 여부를 파악하고 동향을 관찰하는 활동
- ()활동
- 외국경찰이나 인터폴 등과 정보교환·협력관계를 증진하는 활동
- ()활동
- 외사첩보를 수집하고 판단분석한 결과를 정책수립자료로 제공하여 경찰장 또는 국가안보상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활동
-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출입국사범 입건한 경우 지체없이 관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사건 인계

*** 범죄수사규칙상 외국인관련 범죄**

- 경찰이 외국 선박내 발생한 범죄에 대해 수사해야만 하는 경우
- ① 대한민국 육상의 안전을 해할 때
- ② 대한민국 항내의 안전을 해할 때
- ③ 승무원이외의 자나 대한민국의 국민에 관계가 있을 때
- ④ 중대한 범죄가 행하여졌을 때
- 경찰관은 외국인 등 관련범죄 중 중요 범죄에 관하여는 미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받아 수사착수. 다만, 급속요하는 경우 필요한 처분한 후 신속히 경찰청장의 지시 받아야 한다.
- 외국군함내의 출입 급속 요할 때에도 함장에게 범죄자의 임의의 인도요구(급속요할 때 신분밝히고 출입 X)

*** 다문화사회**

1. 접근유형
 - 자유주의적=동화주의(기회평등), 급진적, 조합주의적=다원주의(결과평등)
2. 다문화가족지원법
 - ① 아동·청소년 - 24세 이하
 - ② 기본계획 - 여가부장관은 5년마다 수립
 - ③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 주한미군지위협정**

- 적용대상자
 - ①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주한미대사관 합중국군대 인원, 주한미대사관 근무 무관과 주한 미군사교문단원은 제외)
 - ② 군속
 - ③ 가족(배우자 및 ()세 미만의 자녀)
 - ④ 초청계약자
- 국가배상
 1. 배상액의 분담
 - ① 전적으로 미군 책임 - 미군 ()%, 한국정부 ()% 분담
 - ② 공동책임 - 미군과 한국정부 각각 50% 부담
 2. 배상신청
 - ① 공무 중 사건은 피해행위 있었던 날부터 ()년 이내
 - ② 비공무 중 사건은 피해행위 있었던 날부터 ()년 이내

*** 외교사절**

1. 특권 - 신임장후대하고 주재국에 입국즉시
2. 직무개시 - 신임장의 정본 제출 시부터
3. 외교특권
 - 범죄인 비호권은 특권 아님
 - 외교가 단절된 경우에도 문서불가침 인정
 - 문서가 간첩행위의 서증인 경우 불가침성 상실
4. 주한 외국공관원

- ① 국내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영사관원, 행정·기능직원 및 그 가족, 노무·사무직원을 포함한다.
- ② 외교관(공관장과 외교직원) - 비엔나 협약의 모든 특권 향유
- ③ 노무직원(운전원, 청소부, 경비원, 요리사 등) - 직무 중 행위에 한하여 신체불가침, 형사재판권, 민사재판권, 행정재판권 면제
- ④ 행정·기능직원(행정보조원, 비서등) - 신체불가침과 형사재판권 면제는 공사무 불문 인정, 민사와 행정재판권 면제는 공무 중 행위에 한한다.

*** 국제경찰공조**

1. 조약의 유형

	가장 격식 따지는 정식의 문서. 정치·외교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기록하는데 사용
	주로 정치적 요소 포함되지 않은 전문적·기술적인 주제를 다룸. 조정 어렵지 않은 사안에 대한 합의에 사용
	입법적 성격의 합의에 많이 사용
	기본문서에 대한 개정이나 보충적인 성격을 띠는 조약에 주로 사용
*신사협정 - 조약 X	

장정훈 마무리 특강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실무종합

2020.00.00 [토]

담당 : 장 정 훈 교수

cafe.daum.net/tntpolice

❖ 인터폴

1. 의의 및 발전과정

- 자체수사관 동원하여 범인 추적·수사 및 검거한다. - (O / X)
- 체포나 구속등에 관한 권한 인정 - (O / X)
- 발전과정
 - ① 1914년 모나코에서 제1차 국제형사경찰회의 개최
 - ② 1923년 비엔나에서 제2차 국제형사경찰회의 개최 및 국제형사경찰위원회(ICPC) 창설
 - * 국제형사경찰위원회(ICPC)는 유렵대륙 위주의 기구
 - ③ 1956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발족

2. 조직

총회	최고의결기관
	인터폴 모든 회원국에 설치되는 상설기관 경찰청 외사국 외사수사과 인터폴계
	국제범죄 예방과 진압위해 각 회원국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하는 총본부이자 추진체

3. 협조원칙

	재정부담 정도에 구애됨이 없이 동등하게 협조
	정치·지리·언어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음
협력범위	일반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국한되며, 정치·군사·종교·인종적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관여나 활동도 금지

4. 국제수배서

적색(체포), 청색(범죄관련인 신원과 소재확인), 녹색(상습), 황색(실종자), 흑색(사망자), 자주색(수범), 오렌지(폭발물, 테러범)

5.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기준

- 장기 2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범하여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중
- ①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관련사범
 - ② 조직폭력, 전화금융사기 등 조직범죄 관련 사범
 - ③ 다액()억 원 이상) 경제사범
 - ④ 사회적 파장 및 사안 중대성 고려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적색수배 요청한 기타 중요사범

6. 인터폴 적색수배자 입국에 따른 관할 경찰서의 조치요령

- ① 수배자 여부 컴퓨터로 재확인한 후 수배자 동향 24시간 감시
- ②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 외사과에 보고하여 필요한 인원 지원받는다.
- ③ 수배자가 타관할로 이동한 경우 이동한 경찰서 외사요원에게 동향감시를 인계한 후 경찰청으로 즉보
- ④ 인수받은 경찰서는 수배자 출국할 때까지 동향감시하고 그 결과를 매일 경찰청에 즉보

❖ 국제형사사법공조

1. 공조원칙 - 상호주의, 쌍방가벌성, 특성성

2. 법과 조약이 다르면 조약이 우선

* 조약은 공조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공조범위 확대

3. 우리나라는 1992년 호주와 최초로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3. 임의적 공조거절사유

- ① 대한민국 주권, 국가안보, 안녕질서, 미풍양속 해할 우려 (재산상 손실 X)
- ② 인종·국적·성별·종교·사회적 신분 이유로 처벌받을 우려
- ③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
- ④ () 법률에 의하여 범죄구성 X
- ⑤ 요청국 보증 X

4. 대한민국에서 수사진행 중, 재판계속 된 범죄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는 수사, 재판절차 종료될 때까지 공조를 ()

5. ()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하여 협력요청 받거나 요청하는 경우 국제범죄정보 및 자료교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범죄인 인도

1. 법과 조약이 다르면 조약이 우선

2. 인도원칙

- ① 상호주의 - 인도조약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
- ② 쌍방가벌성, 최소한 중요성 - 대한민국과 청구국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1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 인도가능
- ③ 정치범불인도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범한 정치적 성격 지닌 다른 범죄 재판하거나 이미 확정된 형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범죄인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원수살해범은 인도가능).
* 정치범에 해당하는지는 전적으로 피청구국이 판단.
* 범죄인인도법에는 정치범 해당범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예외 사항만을 규정
- ④ 자국민 불인도 - () 인도거절 사유로 규정
- ⑤ 특정성 - 인도요청 범죄로만 처벌
- ⑥ 유용성 - 시효, 사면
- ⑦ 최소한 중요성 원칙 - 사형, 무기징역·금고, 장기 ()년 이상 징역·금고
- ⑧ 군사범 불인도 - 명문규정 (O / X)

3. 인도거절사유

절대적	① 공소시효 완성 ② 인도범죄, 대한민국 법원 ③ 상당한 이유 없는 경우 ④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등 이유로 처벌 받을 염려
임의적	① 대한민국 국민 ② 인도범죄 전부·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경우 ③ 인도범죄 외의 범죄 ④ 제3국 ⑤ 비인도적

4. 인도절차

- ① 외교부장관 → 법무부장관 → 서울고검 → 서울고법
- ②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때는 법원은 구속된 날로부터 () 이내에 결정
- ③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
-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 전속관할

❖ 국기

- 국기와 유엔기 게양할 경우 앞에서 바라보아 ()에 유엔기, ()에 국기 게양
- 단독주택 대문, 공동주택 각 세대 난간에는 중앙이나 앞에서 바라보아 ()에 국기 게양